

ESCO 사업 안내서



본 안내서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개념을 안내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중 ESCO투자사업 추진에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한 책자입니다.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및 변경신청 홈페이지(<https://finance.energy.or.kr>)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 “ESCO 등록·변경·취소 신청” 클릭

- ESCO투자사업 자금신청 홈페이지 (<https://finance.energy.or.kr>)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신청” 클릭

CONTENTS

I. ESCO 안내	1
1. ESCO 제도 개요	3
2. ESCO 활동현황	13
3. ESCO 자금지원	14
4. 중소기업 중 ESCO 업종 특별세액감면	16
II. ESCO 계약관련규정	17
1. 계약의 특성 및 공공부문 적용방안	19
2. 주요내용	20
III.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25
1.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27
2. [별표 1]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신청서의 구비서류 작성요령	34
3. [별표 2] ESCO투자사업 예정가격 작성기준	35
4. [별표 3] ESCO투자사업 적격심사기준	43
5. [별지 제1호 서식] ESCO투자사업 성과확정 표준계약서	60
6. [별지 제2호 서식] ESCO투자사업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 표준계약서	80
7. [별지 제3호 서식] ESCO투자사업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 표준계약서	97
8. [별지 제4호 서식]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영업보고서	109
IV. 부 록	111
1. ESCO 관련법규 주요내용	113
2. ESCO 자체투자실적인정 안내	128
3. ESCO 투자사업 대표사례	137

I. ESCO 안내

1. ESCO 제도 개요
2. ESCO 활동현황
3. ESCO 자금지원
4. 중소기업 중 ESCO 업종 특별세액감면



1

ESCO 제도 개요

ESCO의 정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장비, 자산 및 기술 인력을 갖추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등록된 업체를 말함

※ ESCO(Energy Service COmpany)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ESCO 투자사업의 개념

ESCO투자사업은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기존의 저효율로 운전 중인 에너지 사용시설을 고효율 에너지사용시설로 대체·개조·보완 등을 하고자 하나, 기술적 또는 경제적 (투자금)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을 때,

- ESCO가 에너지진단을 통해 에너지절약 개선사항을 발굴·제안하여 에너지사용자와 계약을 통해 도출된 에너지절감량(액) 성과를 보증 또는 확정하여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의 사업으로
- 투자비용을 에너지사용자가 조달하는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 투자비용을 ESCO가 조달하는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 및 예상 절감량을 바탕으로 투자비 상환계획을 확정하는 성과확정계약을 체결하여
- ESCO가 에너지사용자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함

□ ESCO를 통한 에너지절약 및 효율개선 시설투자의 장점

-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에 따른 초기 대규모 투자비 부담 감소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따른 경제적, 기술적인 위험부담 감소
- ESCO가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등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 가능

가. 도입배경

- 70년대 말 미국에서 태동한 새로운 에너지절약 투자방식
-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을 결정
 - '91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제도의 근거 마련
 - '92년 4개 업체가 등록요건을 갖추고 활동 시작

나. 법적근거 및 등록요건

1) 법적근거 및 사업범위

□ 법적근거

- ESCO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구 분	근 거 조 항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27조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등) 제30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등)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4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신청)

* 세부 내용은 부록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련법규 주요내용 참고(p107)

□ 사업 수행 범위

-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사업
-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 에너지절약형 시설 및 기자재의 연구 개발사업

□ 주요 사업분야

-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
- 온실가스배출감축설비 설치사업
- 에너지진단결과 개선사업
- 기타 에너지효율 향상사업

2) 등록요건 및 절차

□ 등록요건

- ESCO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2)에서 정한 일정기준 이상의 장비, 자산,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함

구분	내용		기준
장비	1. 적외선 온도계		1대 이상
	2. 데이터 기록계		1대 이상
	3. 온도·습도계		1대 이상
자산	법인	자본금	2억원 이상
	개인	자산평가액	4억원 이상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기계, 재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에너지 또는 가스 분야의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인정 불가)		3명 이상
<p>비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인 경우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을 말하며, 납입자본금과 최근 1년 이내에 작성된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실질자본금으로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나머지를 말한다)가 모두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2. 개인인 경우 자본금은 자산평가액으로 하되, 자산평가액은 등록된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3. 기술인력 중 기사는 같은 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정한 에너지진단사로 대체할 수 있다. 4. 한 사람이 두 종류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등록절차 및 방법

- ESCO의 등록업무는 '99년 7월 1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함에 따라 공단에서 등록증을 교부함
- ESCO 신규등록을 원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https://finance.energy.or.kr>)



* [별표1]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신청서의 구비서류 작성요령 참조(30p)

- 온라인 등록신청서 제출이 완료되면 공단은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을 통해 등록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증을 교부함



* 처리기간은 15일 이내이며, 서류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이 된 업체는 지방세법 제35조(신고납부 등)에 따라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에 면허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함
- 지자체 세무과 또는 전국지방세 신고납부서비스(www.wetax.go.kr) >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면허분)에서 등록면허세 납부가능

□ 등록유지 절차 및 방법

- 등록 이후 등록요건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변경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변경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자본금, 주소,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및 기술인력 또는 장비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 ESCO는 매년 5월 31일까지 전년도 계약실적을 포함한 영업보고서와 등록기준 유지여부에 관한 증빙자료를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영업보고서 제출 시 실적증빙서류(계약서 등)와 신규등록 시 제출했던 자산, 기술인력, 장비 등 관련서류를 최신화하여 제출
- * ESCO 기업의 등록 및 관리 기준, 영업실적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645호)에 규정

□ 등록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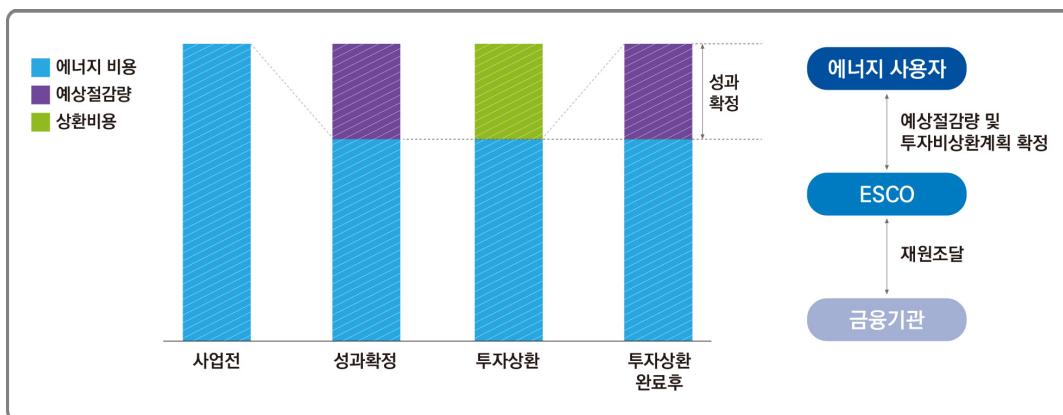
- 영업보고서 제출 여부, 사업수행실적 및 등록기준 적합여부 등을 확인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6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취소 등)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 ESCO이 취소될 수 있음

※ 등록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 전자민원 >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등록 홈페이지 (<https://finance.energy.or.kr>) 에서 확인 및 진행 가능

다. ESCO투자사업 계약 종류

1) 성과확정 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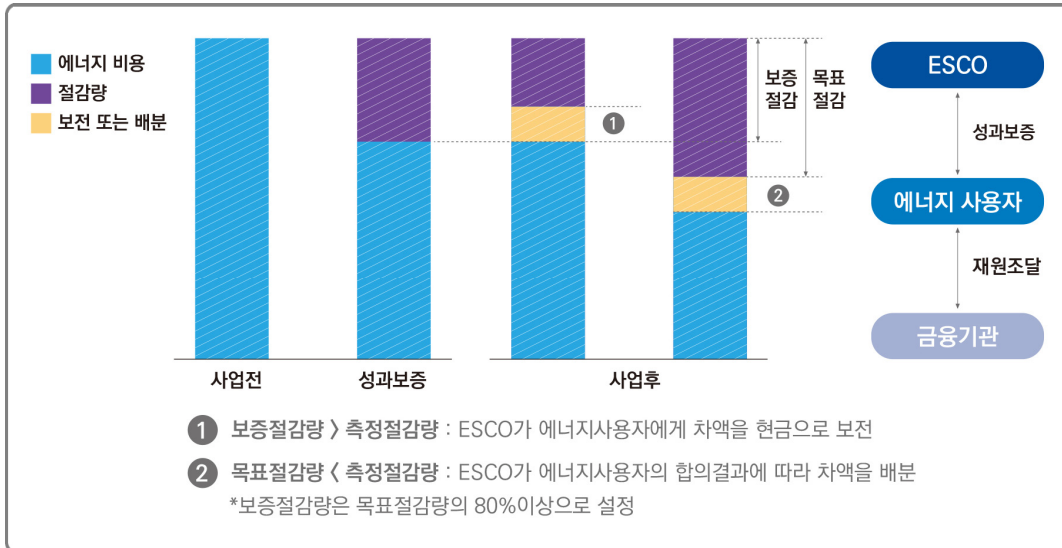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고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이전에 에너지진단 등으로 산출한 예상절감량(액)을 에너지사용자가 확인한 후 예상절감량(액)을 바탕으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게 투자비 상환계획을 확정하는 방식



- 에너지절약효과가 충분히 검증된 시설에 대해 예상 에너지절감량(액)을 바탕으로 투자비상환계획을 미리 확정하는 방식
- 고효율에너지 인증 기자재 등 에너지절약효과가 충분히 검증된 시설에 대해 추진하고, 예상 에너지절감량(액)으로 성과를 확정함에 따라 에너지사용자 및 ESCO 모두 예상 에너지절감량(액)의 충분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
 -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서모보터 제어형 성형기, 인버터 제어형 압축기에 한해 자금지원 가능
- 2015년 7월부터 시행

2)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 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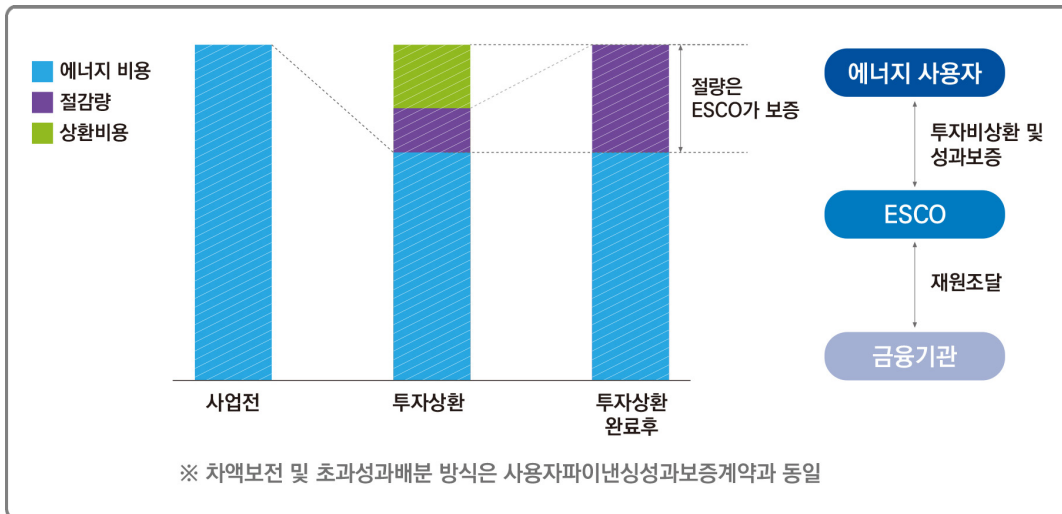
- 에너지사용자가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고, ESCO는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에 따른 에너지절감량(액)을 에너지사용자에게 보증하며, 측정절감량(액)이 보증절감량(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ESCO가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



- ESCO와 에너지사용자가 상호 합의하여 목표절감량 및 보증절감량(목표절감량의 80% 이상)을 설정하고, 시설설치 완료 후 에너지절감량(액) 측정결과에 따라 차액 보전 또는 초과 절감분에 대한 초과성과배분 등 계약을 이행함
 - 측정절감량(액)이 보증절감량(액)에 미달한 경우 ESCO는 차액을 에너지사용자에게 보전
 - 측정절감량(액)이 목표절감량(액)을 초과한 경우 약정에 의한 초과성과배분이 가능
- 에너지사용자가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ESCO의 자금조달 부담은 없지만, ESCO는 에너지절감량(액)에 대한 성과보증 책임이 있음
- 2004년부터 시행

3)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 계약

- ESCO가 자금조달과 에너지절감량(액) 보증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하며, 에너지 사용자는 에너지절감량(액) 범위 내에서 투자비를 ESCO에게 분할 상환하는 방식



- ESCO와 에너지사용자가 상호 합의하여 목표절감량 및 보증절감량(목표절감량의 80% 이상)을 설정하고, 시설설치 완료 후 에너지절감량(액) 측정결과에 따라 차액보전 또는 초과절감분에 대한 초과성과배분 등 계약을 이행함
 - 측정절감량(액)이 보증절감량(액)에 미달한 경우 ESCO는 차액을 에너지사용자에게 보전
 - 측정절감량(액)이 목표절감량(액)을 초과한 경우 약정에 의한 초과성과배분이 가능
- ESCO가 자금을 조달하고 성과보증을 책임지기 때문에 에너지사용자는 초기 투자비 부담이 덜한 장점이 있음
- 2011년부터 시행

〈참고 : ESCO 투자사업 계약방식 변경 현황〉

現 계약방식	내용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현재
성과확정 계약	○ESCO가 자금조달 ○절감량 및 상환 계획을 미리 확정	-	-	-	성과확정계약 ('15.7월 신설)
사용자파이낸싱 성과보증 계약	○사용자가 자금조달 ○ESCO가 성과보증 ○차액보전 및 배분	성과보증 계약	성과보증계약	사용자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 ('13.2월 명칭변경)	사용자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
사업자파이낸싱 성과보증 계약	○ESCO가 자금조달 ○ESCO가 성과보증 ○차액보전 및 배분	-	新성과배분계약 ('11.2월 신설)	사업자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 ('13.2월 명칭변경)	사업자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
(폐지)	○ESCO가 자금조달 ○절감액은 ESCO- 사용자간 합의에 의해 배분	성과배분 계약	성과배분계약	사업자파이낸싱 성과배분계약 ('13.2월 명칭변경)	폐지

라. ESCO 투자사업의 일반적 흐름도

1) 투자 상담

-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희망하는 에너지사용자와 ESCO간의 에너지절약 시설 투자 상담
 - ESCO는 절약시설에 대한 예비조사 등을 통하여 간이 제안서를 제시

2) 에너지진단 및 사업추진 결정(계약체결)

- 투자상담 후 ESCO는 정밀 에너지진단을 통하여 에너지사용자와의 계약을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시
 - 에너지사용시설의 열 및 전기 등 에너지 사용현황을 조사하고
 - 운전현황 및 효율분석을 통하여 에너지절감 항목에 대한 예상 절감량 및 투자비를 산출

- ESCO의 사업제안서를 토대로 에너지사용자는 ESCO와 계약체결을 결정
 - 예상 에너지절감량(산출방식 포함), 총 투자규모, 자금조달방법, 투자비회수기간, 사후관리(MRV), 투자금회수방법 등을 충분히 검토
 - 절감량 산출서, 예상 에너지절감량, 목표 및 보증 절감량, 사후관리(MRV) 계획, 투자비상환계획 등의 중요사항을 계약서에 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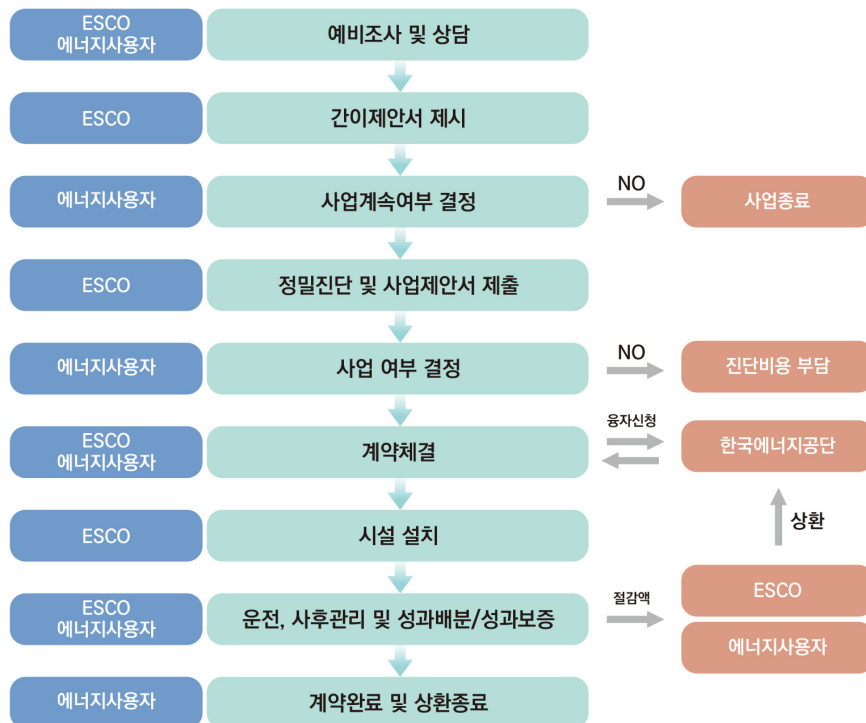
3) 절약시설 설치공사 및 사후관리

- ESCO는 절약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준공 후 사후관리를 실시
 - 최적의 가동을 위한 교육 및 설비운전상태의 교육을 실시하며
 - 에너지사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에 대한 사후관리(MRV)를 실시

4) 계약종료

- 계약에 따른 투자비회수가 끝나면 ESCO투자사업 계약은 종료되고, 이 시점 부터 에너지절감비용 전액이 에너지사용자의 몫으로 돌아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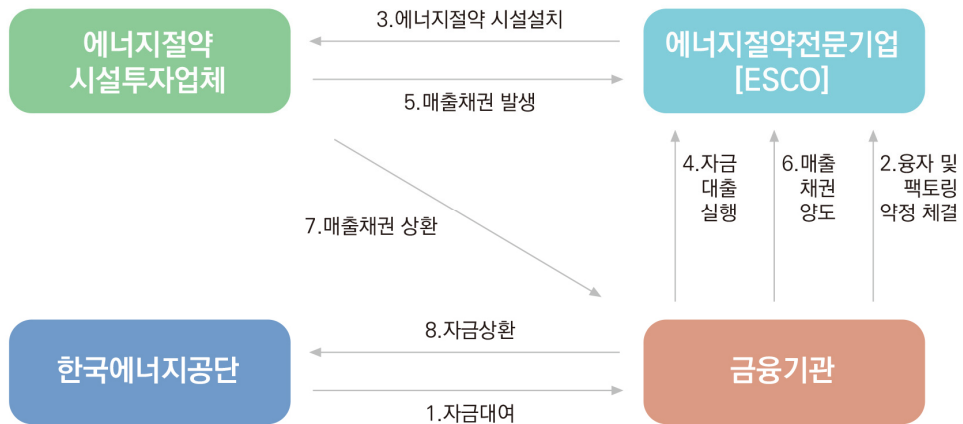
[ESCO 투자사업 일반적 흐름도]



5) ESCO 매출채권 양도(팩토링)

- ESCO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인 성과확정계약 또는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 계약의 경우 ESCO 투자사업에 따른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 가능
 - ESCO의 자금난과 채권관리(부채율) 부담을 덜어주는 금융기법
 - 매출채권 양도시 ESCO는 한국에너지공단에 이를 통보하여야함(에너지절약전문 기업 관리규정 제17조(매출채권의 양도))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매출채권 팩토링 흐름도]



2

ESCO 활동현황

가. 에너지전문기업(ESCO) 등록업체 현황

- '92년 4개 업체 등록을 시작으로 '15년도 등록기준 완화로 등록업체가 크게 증가한 뒤 현재는 약 300여개 업체가 등록 중

〈연도별 ESCO 등록업체 수 현황〉

(단위 : 개)

연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신규등록	39	30	27	148	65	54	47	31	40	29
등록취소	46	35	29	45	53	62	58	52	36	36
유효 ESCO	228	223	221	324	336	328	317	296	300	293

* '21년말 기준 대기업 29개, 중견기업 24개, 중소기업 235개, 기타 5개

* ESCO 등록 업체 리스트 및 업체정보(소재지, 주요 사업분야, 연락처 등)는 자금용자시스템 (<https://finance.energy.or.kr>)에서 확인 가능

나. ESCO사업 투자실적

- ESCO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93년부터 현재까지 약 3조 517억원 규모로 ESCO 투자사업을 위한 정책자금이 지원되었으며, 민간자금 자체투자실적 규모는 실적 인정제도 도입 '06년부터 현재까지 약 4천억원 규모의 사업실적이 있음

〈연도별 ESCO 투자사업 시장규모〉

(단위 : 건, 억원)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정책자금 ¹⁾	건수	24	31	21	28	15
	금액	521	537	161	413	410
민간자금 ²⁾	건수	50	50	57	68	61
	금액	294	351	333	499	590
합 계	건수	74	81	78	96	76
	금액	815	888	494	912	1,000

1)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을 통한 사업실적(자금지원 개요 12p 참고)

2) 자금지원 이외에 민간자금을 활용 사업으로서, ESCO협회를 통해 인정받은 자체투자 실적(121p 참고)

3 ESCO 자금지원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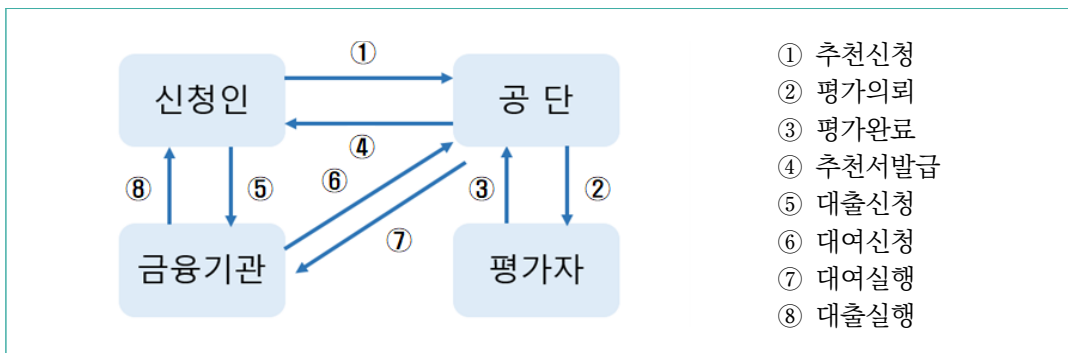
○ 사업개요

-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절약형 시설 투자시 투자비의 일부를 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용자사업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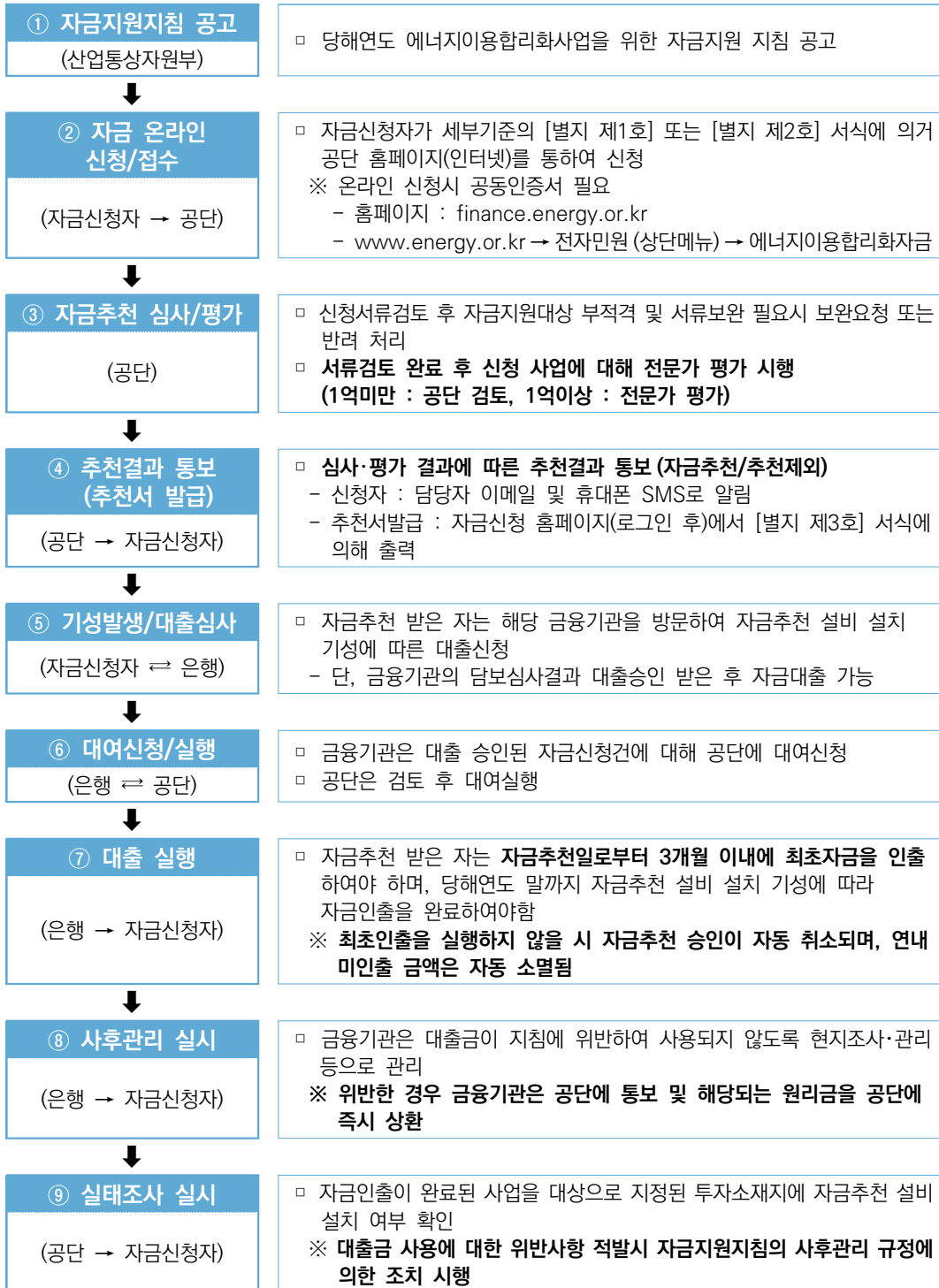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중소·중견기업을 에너지 사용자로 하는 대기업ESCO
 - * 자금 신청자 기준이므로 '대기업 에너지사용자 + 중소·중견 ESCO' 형태의 사업인 경우도 ESCO가 자금신청 시(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 또는 성과확정계약) 용자지원 가능
- 지원사업 : 절약시설설치사업, 온실가스배출감축설비설치사업, 에너지진단결과 개선사업, 기타 에너지효율향상사업(절감효과 5% 이상)
- 지원비율 : ESCO 투자사업 100% 이내
- 지원한도 : 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150억원 이내(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은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의 2배 이내)
- 대출기간 :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금리 : 변동금리 1.5% 또는 고정금리 1.75%

○ 지원체계



* 자금신청 및 자금지원에 관한 기타 세부안내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용자시스템 (<https://finance.energy.or.kr>)에서 가능

○ 자금지원 절차



4

중소기업 중 ESCO 업종 특별세액감면

□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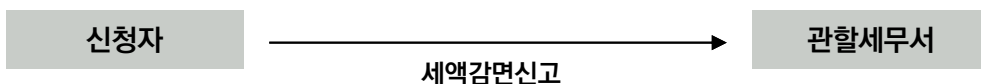
- 중소기업 중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비율을 세액에서 감면하여 주는 제도

□ 지원내용

- 근 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지원 내용
 - 중소기업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감면 비율을 적용
- 감면 비율
 -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
 -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30
 -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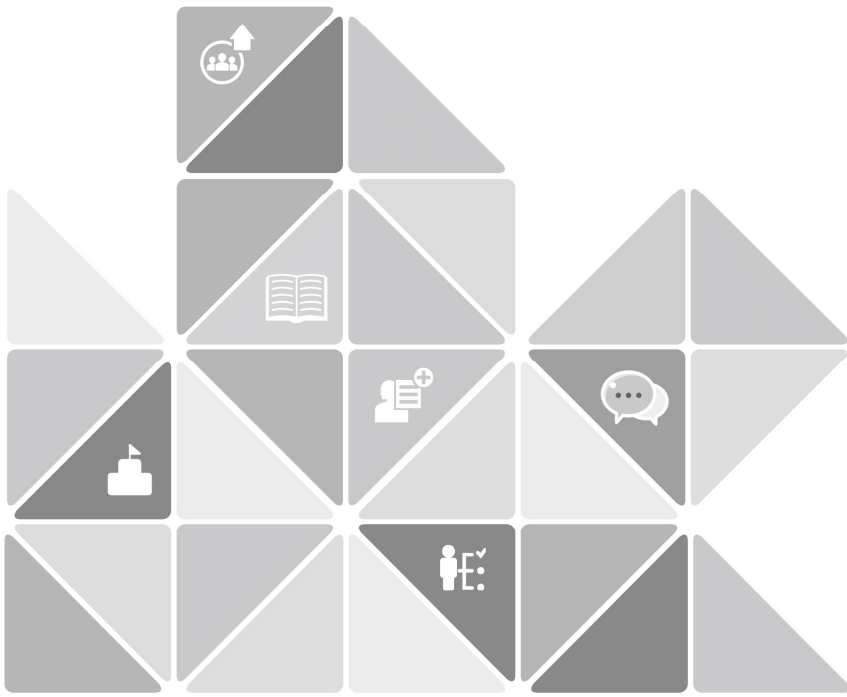
□ 조세감면 절차 및 방법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II. ESCO 계약관련규정

1. 계약의 특성 및 공공부문 적용방안
2. 주요내용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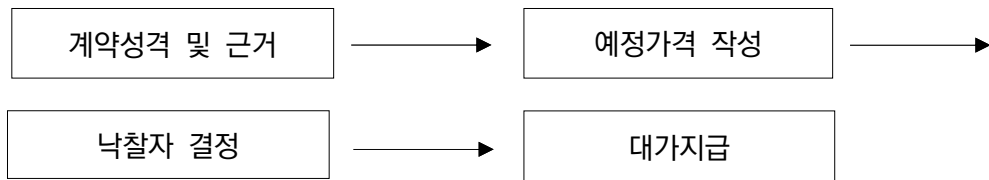
계약의 특성 및 공공부문 적용방안

가. ESCO투자사업의 특성

- 공공부문의 경우, 특히 성과확정 및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 계약은 별도의 공사 예산 확보 및 직접 대출 없이도 ESCO가 에너지절약시설에 선투자하면 공공기관은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용을 상환함

나. 현행 계약규정의 적용

- 정부 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국고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이 가능하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은 ESCO 투자사업 계약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 ESCO투자사업은 에너지진단, 장기간의 사후관리 등의 용역과 시설공사가 복합되어 있는 특수한 성격의 계약임
- 따라서 공공부문에서 ESCO사업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국가계약법상 별도의 해석과 규정정비가 필요하여, 산업부에서는 '98년 8월 관련 회계규정을 마련, 각 공공기관에서 이를 활용토록 하고 있음



2

주요내용

가. 에너지절약 용역사업의 흐름도



나. 계약의 근거

○ 국가계약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69조 제3항에 의거 장기계속 용역계약 형태로 공공부문에서 체결이 가능함

- 관련근거 : 재정경제부 회제 41301-1787 ('98. 7. 2.)

『에너지절약 성과배분 계약체결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국가계약법 관련 규정

- **법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 ② 각 중앙관서의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운송·보관·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 ② 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③ 장기물품제조등과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구축사업과 함께 해당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을 포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계약체결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 **시행규칙 제49조【계약서의 작성】** :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반사항외에 당해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 계약방법

- 에너지절약 용역사업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의함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적격심사기준)을 마련

국가계약법 관련 규정

- **법 제7조【계약의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라. 예정가격 작성

1) 현행 규정 검토

-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0조(기타용역의 원가계산) 제1항을 보면,
-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음

2) 에너지절약용역사업 원가산정에 관한 기준 (주요내용)

- 총원가 : 시설설치비 + 에너지진단관리비 + 사후관리비 + 지급이자

구 분	주 요 내 용
시설설치비	에너지절약시설 설치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에너지진단 관리비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전 에너지진단 용역에서 발생하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구분 작성함
사후관리비	에너지절약시설 설치후 사후관리 계획(MRV 포함)의 이행에서 발생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로 구분 작성
지급이자	에너지절약시설 설치를 위해 투자되는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의 금리는 입찰에 참여하는 ESCO가 조달가능한 용자금리로 작성(성과확정계약 또는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

마. 적격심사기준(낙찰자 결정)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제19조(적격심사기준) 참조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645호, 2019.11.12)

바. 대가지급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대가의 지급) 및 제69조(장기계속계약및계속비계약)의 규정을 준용
 - 에너지 절약사업 용역비를 총 용역 부계약금액으로 하고, 연차별 절약금액을 연차별 계약금액으로 지급
- 국가재정법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와 국가재정법 제80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에 근거, 각 중앙관서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
 -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의 ESCO투자사업 계약에 따른 상환금 집행 근거 마련

〈비목별 지침〉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목)	○ 그린 리모델링 사업자,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에너지절약시설 설치기업과의 성과배분 계약에 따른 건축·설비투자 상환금은 절약시설 투자에 따른 공공요금(전기료 등)의 절약액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시설장비유지비 (210-09목)	○ 그린 리모델링 사업자,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에너지절약시설 설치기업과의 성과배분 계약에 따른 건축·설비투자 상환금은 절약시설 투자에 따른 공공요금(전기료 등)의 절약액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 예산편성기준의 경우도 세출과목 중 ‘관서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 등에 관련 사항 반영

〈예산편성기준〉

목번호	목	내역
200	2. 물 건 비	
210	운 영 비	210-02 공공요금 및 제세 2. 제 세 -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 따라서 국고금관리법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규정에 의한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원인 행위가 됨

국고금관리법 관련 규정

- **법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

- **법 제43조【예산의 배정】**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불구하고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으며,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Ⅲ.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1.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2. [별표 1]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신청서의 구비서류 작성요령
3. [별표 2] ESCO투자사업 예정가격 작성기준
4. [별표 3] ESCO투자사업 적격심사기준
5. [별지 제1호 서식] ESCO투자사업 성과확정 표준계약서
6. [별지 제2호 서식] ESCO투자사업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 표준계약서
7. [별지 제3호 서식] ESCO투자사업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 표준계약서
8. [별지 제4호 서식]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영업보고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시행 2019. 11. 12.]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645호, 2019. 11. 12., 타법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또는 “ESCO(Energy Service COmpany)”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관리업무에 관하여 법령 및 기타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ESCO투자사업”이라 함은 예상절감량(액) 또는 보증절감량(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에너지절약용역사업으로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 에너지사용자가 성과 확정,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 또는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절약시설설치”라 함은 에너지사용시설 또는 공정을 에너지절약 시설 또는 공정으로 개조, 보완, 대체, 신설, 증설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에너지사용자”라 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에너지 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한, 시설을 소유하지 않고 관리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도 포함한다.
4. “에너지절감량(액)”이라 함은 절약시설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에너지사용량 또는 에너지비용의 감소를 말한다. 다만, 단순히 에너지원의 변경에 의해 발생한 에너지비용의 감소는 해당하지 않는다.
5. “목표절감량(액)”이라 함은 성과보증을 위하여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절약시설 설치 이전에 에너지진단 또는 기타 방법으로 산출한 최대 에너지절감량(액)을 말한다.
6. “보증절감량(액)”이라 함은 성과보증을 위하여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에너지사용자에게 제시하는 에너지절감량(액)을 말한다.
7. “예상절감량(액)”이라 함은 성과확정을 위하여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절약시설 설치 이전에 에너지진단 또는 기타 방법으로 산출한 에너지절감량(액)을 에너지

- 사용자가 확인 후 최종 확정된 에너지절감량(액)을 말한다.
8. “성과확정”이라 함은 초기 투자비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조달하고 예상절감량(액)을 바탕으로 투자비 상환계획을 확정하는 것을 말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한 방식을 적용한 계약을 “성과확정계약”이라 한다.
 9.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이라 함은 초기 투자비는 에너지사용자가 조달하고 절약시설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에너지절감량(액)을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에너지사용자에게 보증하는 것을 말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을 준용한 방식을 적용한 계약을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이라 한다.
 10.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이라 함은 초기 투자비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부담하고 절약시설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에너지절감량(액)을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에너지사용자에게 보증하며, 보증한 절감량을 초과하는 절감량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 에너지사용자가 합의한 조건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말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을 준용한 방식을 적용한 계약을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이라 한다.
 11. “자체투자사업”이라 함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법 제14조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이차보전용자금을 포함) 이외의 투자 자금으로 에너지사용자와 성과확정계약이나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 또는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절약시설설치에 투자한 사업을 말한다.
 12. “공공기관”이라 함은 법 제8조의 기관을 말한다.

제2장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및 관리 기준 등

제4조(등록업무 등) 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법 제69조 제3항제8호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단이사장은 등록업무를 시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세부기준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등록신청 등)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이 규정 [별표1]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신청서의 구비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구비서류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서류 검토 등) ① 공단이사장은 제5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사장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관련 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신청인은 공단이사장의 보완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보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증 교부 등) 공단이사장은 제6조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 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제8조(처리기간 등) ① 제5조에 따른 등록신청으로부터 제7조에 따른 등록증 교부까지의 처리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② 처리기간의 계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단 민원사무처리내규에 따른다.

제9조(등록기준 유지 등)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이사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자본금 변경
2. 등록 기술인력 또는 장비의 변동
3. 주소,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제3장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보고 및 검사 등

제10조(영업실적 보고 등) ①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법 제66조제1항 및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계약실적을 포함한 영업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이 규정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영업보고서 제출시 등록기준 유지여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또는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서(개인인 경우) 1부
2.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법」 제6조에 따른 세무사가

- 검증한 최근 1년 이내의 대차대조표
- 3. 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또는 박사학위증명서 각 1부
- 4. 기술인력에 대한 4대보험가입증명서 각 1부

제11조(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단으로 하여금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 절약전문기업의 사무소·사업장·공장·창고 또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투자한 사업장에 출입하여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또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수행한 사업의 시설관리상태, 에너지절감량, 성과보증의 이행여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관계인은 필요한 자료제출 등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③ 공단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에 대하여 사유서 제출 또는 개선 등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절약시설설치에 대한 사후관리)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절약시설설치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기간 이상에 걸쳐 에너지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당해 절약시설설치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3조제8호에 따른 성과확정계약의 경우 에너지사용자가 예상절감량(액)으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게 총 사업금액을 상환하는 기간
- 2. 제3조제9호에 따른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의 경우 에너지사용자가 보증 절감량(액)으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게 총 사업금액을 상환하는 기간
- 3. 제3조제10호에 따른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의 경우 에너지사용자가 보증 절감량(액)으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게 총 사업금액을 상환하는 기간

제13조(등록의 취소요청 등) 공단이사장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법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공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사용자가 적정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정보는 사업실적,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재무상태, 취득

면허, 기타 에너지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을 말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공단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자체투자사업 실적인정 등

제15조(자체투자사업의 실적인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자체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을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체투자사업”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실적으로의 인정과 관련된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인설립을 허가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이하 “ESCO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체투자사업”을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실적으로 인정하는데 필요한 기준은 ESCO협회가 별도로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적용한다.

제5장 성과보증사업 등

제16조(성과보증 등) ①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에너지사용자와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 또는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목표절감량(액)의 8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에너지사용자와 합의하여 보증절감량(액)을 설정하고 에너지사용자에게 이의 달성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제1항에 따른 성과보증을 위하여 절약시설설치의 완료검사를 실시한 이후 에너지사용자와 합의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에너지절감량(액)을 측정(이하 “측정절감량(액)”이라 한다)하고 그 측정결과를 에너지사용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제2항에 따른 측정절감량(액)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측정절감량(액)이 보증절감량(액)에 미달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보증절감량(액)과 측정절감량(액)의 차액을 에너지사용자에게 현금으로 보전(이하 “차액보전”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2. 측정절감량(액)이 목표절감량(액)을 상회하는 경우 측정절감량(액)과 목표절감량(액)의 차액에 대해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합의하여 배분(이하 “초과성과배분”이라 한다)의 비율을 정하며, 에너지사용자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게 배분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측정절감량(액)이 보증절감량(액)과 목표절감량(액)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제1호에 따른 차액보전 및 제2호에 따른 초과성과배분의 의무를 갖지 아니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차액보전금액 또는 초과성과배분금액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제17조(매출채권의 양도) ①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에너지사용자와 성과확정계약 또는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을 체결한 경우에는 에너지사용자의 승낙을 받아 ESCO투자사업에 대한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② 매출채권 양도 시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매출채권을 양도한 경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공단 이사장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예정가격작성기준 및 적격심사기준

제18조(예정가격작성기준) 공공기관이 에너지절약용역사업(ESCO투자사업)에 대한 계약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예정가격 작성시 적용하여야 할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제19조(적격심사기준) 공공기관이 에너지절약용역사업(ESCO투자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절약용역사업의 적격심사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제20조(유효기간) 이 공고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공고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2013-40호, 2013. 2.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타 규정 및 서식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과 배분계약”, “성과보증계약”, “신성과배분계약”은 각각 “사업자파이낸싱성과배분계약”,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으로 본다.
- ② 제3조 제9호에 따른 자체투자사업 인정 범위에 관한 개정 사항은 2013년도 지원분 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8-177호, 2018. 3.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645호, 2019. 11. 12.>

이 공고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 [별표 1]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신청서의 구비서류 작성요령(제5조 관련)
- [별표 2] ESCO투자사업 예정가격 작성기준(제18조 관련)
- [별표 3] ESCO투자사업 적격심사기준(제19조 관련)
- [별지 1] ESCO투자사업 성과확정 표준계약서(제3조 제8호 관련)
- [별지 2] ESCO투자사업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 표준계약서(제3조 제9호 관련)
- [별지 3] ESCO투자사업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 표준계약서(제3조 제10호 관련)
- [별지 4]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영업보고서(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신청서의 구비서류 작성요령(제5조 관련)

(1) 사업계획서

가. 회사 일반현황

- 연혁
- 조직 : 직제표, 인원, ESCO팀 인적사항
- 기타 일반사항

나. 기존사업 현황(분야, 실적 등)

- 최근 주력사업분야 및 분야별 사업실적(3개년)
- 주요실적 요약

다. 향후 사업계획

- ESCO사업 추진계획(3개년 정도)
- 향후 사업추진 세부내용 등

(2) 등기부등본, 최근 1년 이내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보유장비 및 기술인력 명세서

- 보유장비 명세서

번호	장비명	측정범위	제조회사	구입연월

- 첨부서류 :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장비이력카드, 검교정 확인서류 등)

- 기술인력 명세서

성명	기술자격명	자격증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입사연월

-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 학위증명서(박사학위에 한함), 4대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1부.

(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자산에 대한 평가서(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시 제출한 서류중 변경된 것

[별표 2]

ESCO투자사업 예정가격 작성기준(제18조 관련)

1. 목 적

- 공공기관이 ESCO투자사업에 대한 계약을 시행함에 있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 가격 작성에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

2.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

(1) 계약담당 공무원의 주의사항

- 계약담당 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 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예정가격 작성 등과 관련하여 이 기준에 정한 사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
-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작성시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원가계산 등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하여야 함
-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함

(2) 원가계산의 구성 및 비목

- 원가계산은 ESCO투자사업에서 발생하는 시설설치비, 에너지진단비, 사후관리비 및 지급이자로 구성됨
- 시설설치비는 에너지절약시설 설치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 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함
- 에너지진단비는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전 에너지진단 용역에서 발생하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구분 작성함
- 사후관리비는 에너지절약시설 설치후 사후관리 계획(MRV 포함)의 이행에서 발생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로 구분 작성함

(3) 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 ①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각각 아래에서 정한 산식에 의함을 원칙으로 함
 - 재료비 = 재료비 × 단위당가격
 - 노무비 = 노무량 × 단위당가격
 - 경 비 = 소요(소비)량 × 단위당가격
- ②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함
- ③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등에 의하거나 원가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산출에 있어서는 계약목적물의 내용 및 특성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함

(4) 작성방법

-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붙임]의 ESCO투자사업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됨

3. 비목별 원가계산 방법

(1) 시설설치비

가. 재료비

- ① 직접재료비는 시설설치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함
 - 1) 주요재료비 : 시설설치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 2) 부분품비 : 시설설치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 및 외주품의 가치
- ② 간접재료비는 시설설치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시설설치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함
 - 1)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장갑 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 3) 가설재료비 :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시설설치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 ③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당해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서 계산함.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함
- ④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하여야 함

나. 노무비

- ① 직접노무비는 설치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함. 다만, 상여금은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 1) 기본급(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됨)
 - 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함)
 - 3) 상여금
 - 4) 퇴직급여 충당금
- ② 간접노무비는 직접 설치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함. 다만, 직접노무비의 각호 및 단서의 규정은 이를 준용함
- ③ 직접노무비는 설치시설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함
- ④ 간접노무비는 원가계산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을 곱하여 계산함
- ⑤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다만, 작업현장의 기계화, 자동화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간접노무비가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초과 계상할 수 있음

다. 경비

- ① 경비는 시설설치를 위하여 소요되는 시설설치비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됨
- ② 경비는 당해 계약목적물 시설설치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원가계산 자료,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함
- ③ 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함
 - 1)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당해 비용을 말함
 - 2)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함
 - 3) 기계경비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 상의 건설기계의 경비산정기준에 의한 비용”을 말함
 - 4) 특허권사용료는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함
 - 5) 기술료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우·하우비 (Know-how비)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 (「법인세법」 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초년도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으로 배분 계산함
 - 6) 연구개발비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 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계산함. 다만, 연구개발비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 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음
 - 7) 품질관리비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을 제외함
 - 8) 가설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소, 화장실 등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함
 - 9) 지급임차료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함
 - 10)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동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제외함

- 11) 복리후생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 사무소 직원 등의 의료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 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함
- 12) 보관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함
- 13)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함
-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함
- 15) 소모품비는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방구, 장부대등 소모용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함
- 16) 여비·교통비·통신비는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함
- 17) 세금과공과는 시공현장에서 당해공사와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함
- 18) 폐기물처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 19) 도서인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 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등을 말함
- 20) 지급수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함. 이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함
- 21) 환경보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함
- 22) 보상비는 당해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 하천·기타 재산에 훼손을 가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를 말함. 다만,

당해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함

- 23)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함
- 24)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다만,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제외함
- 25) 기타 법정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를 말함

라. 일반관리비

-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 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지급입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 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하며, 일반 관리비율은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의 6%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마. 이윤

-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함)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2) 에너지진단비

- ① 직접인건비라 함은 당해 업무에 직접종사하는 기술자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한국 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가격으로 함
- ② 직접경비라 함은 당해 업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여비, 특수자료비(특히, Know-how 등의 사용료), 제출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타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 운영비를 말한다)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그 실비를 계산함
- ③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 서무, 경리직원등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수도비, 사무용

소모품,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영업 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함

- ④ 기술료라 함은 에너지절약 용역업체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산함

(3) 사후관리비

- 사후관리비라 함은 에너지절약시설 설치후 사후관리 계획(MRV 포함)의 이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로 하며, '(1) 시설설치비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에 의하여 계산함

(4) 지급이자

- 성과확정계약 또는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의 경우 에너지절약시설 설치를 위해 투자되는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의 금리는 입찰에 참여하는 ESCO가 조달 가능한 용자금리를 적용함

4. 준용 규정

- 이 기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따름

붙임

ESCO투자사업 원가계산서

사업명 :

사업기관 :

비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I. 시 설 설 치 비				
1.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소 계			
2.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3. 경 비				
4. 일반관리비 ()%				
5. 이 윤 ()%				
II. 에너지관리진단비				
1. 직 접 인 건 비				
2. 직 접 경 비				
3. 제 경 비				
4. 기 술 료				
III. 사후관리비(MRV 포함)				
1. 재 료 비				
2. 노 무 비				
3. 경 비				
4. 일반관리비				
IV. 지 급 이 자				
V. 총 원 가				

(주)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의 경우는 'IV. 지급이자' 항목을 삭제

[별표 3]

ESCO투자사업 적격심사기준(제19조 관련)

1. 목 적

- 공공기관이 ESCO투자사업에 대한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기준을 정함

2. 평가기준

- 적격심사 평가는 당해사업의 사업효과, 수행능력, 사후관리 및 입찰가격 등 4개 항목으로 평가하며, 추정가격 규모별 배점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함
 - ①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 붙임-1
 - ②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평가기준 : 붙임-2
 - ③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평가기준 : 붙임-3
 - ④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평가기준 : 붙임-4
 - ⑤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평가기준 : 붙임-5
 - ⑥ 추정가격 3억원 미만 : 붙임-6

3. 심사방법

- 계약담당공무원은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야 함

4. 낙찰자 결정

- 계약담당공무원은 평가기준에 따른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용역은 92점 이상,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함
- 이 경우 최저가 입찰자의 종합평점이 낙찰자로 결정될수 있는 점수 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 이상이 되면 낙찰자로 결정함
-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에 따른 낙찰자 결정결과를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함

5. 준용 규정

- 이 기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따름

붙임-1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억원)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100 이상	100 ~ 50	50 ~ 10	10 ~ 3	3 미만
1. 사업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절감율 ○투자비회수기간 ○에너지절감량 ○상환배분율 	○절감율(%), 투자비회수기간 및 절감량, 상환배분율	40	28	17	12	4
2. 당해용역 수행능력	가. 사업 경험	○투자실적	(14)	(9)	(6)	(3)	(2)
	나. 경영 상태	○부채비율 ○매출액 순이익율	(6)	(5)	(2)	(2)	(1)
	다. 신인도	○ISO국제품질 인증을 받은자	(2)	(2)	(1)	(1)	(1)
	소 계		22	16	9	6	4
3. 사후관리	○하자보증 기간 및 MRV 계획	○하자보증 기간의 적정성 및 MRV 계획서 제출	8	6	4	2	2
4. 입찰가격	※ 평점산식 : 아래		30	50	70	80	90
합 계 (최고 점수)			100	100	100	100	100
5. 가점 및 감점 항목	○사업자파이낸싱 성과 보증방식에 의한 계약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방식에 의한 계약 실적 여부	+1	+1	+1	+1	+1
	○에너지진단기관	○에너지진단기관 지정 여부	+1	+1	+1	+1	+1
	○기술개발	○기술개발실적 여부	+1	+1	+1	+1	+1
	○결격사유	○ESCO등록이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으로 부터 자금지원 지침에 따른 사후관리 위반으로 자금추천제외 조치 중인 경우	-2	-2	-2	-2	-2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1.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 평점 = $30 -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2. 추정가격 50억이상 100억원미만

- 평점 = $50 - 2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추정가격 10억이상 50억원미만

- 평점 = $70 - 4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4.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 평점 = $80 - 20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5. 추정가격 3억원 미만

- 평점 = $90 - 20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붙임-2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평가기준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1. 사업효과	○에너지 절감율	최대 1위 : 13점 2위 : 12점 3위 : 11점 4위 : 10점 5위이하 : 9점	(13)	【주 1】
	○투자비 회수기간	최단 1위 : 13점 2위 : 12점 3위 : 11점 4위 : 10점 5위이하 : 9점	(13)	
	○절감량	최대 1위 : 7점 2위 : 6점 3위 : 5점 4위 : 4점 5위이하 : 3점	(7)	
	○상환배분율	최대 1위 : 7점 2위 : 6점 3위 : 5점 4위 : 4점 5위이하 : 3점	(7)	
	소 계		40	
2. 당해용역 수행능력	가. 사업 경험 ○당해용역규모 (금액)대비 사업실적	실적 100%이상 : 14점 85%이상 : 13점 70%이상 : 12점 50%이상 : 11점 50%미만 : 10점	(14)	【주 2】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2. 당해용역 수행능력	나. 경영 상태			【주 3】
	○부채비율	평균 미만 : 3점 평균 이상 : 1.5점	(3)	
	○매출액 순이익율	평균 이상 : 3점 평균 미만 : 1.5점	(3)	
	다. 신인도			【주 4】
	○ISO국제품질 인증	인증 획득 : 2점 미인증 : 1점	(2)	
		소 계	22	
3. 사후관리	○하자보증기간	투자비회수기간 또는 에너지사용자 지정기간 이상 : 4점 투자비회수기간 또는 에너지사용자 지정기간 미만 : 2점	(4)	【주 5】
	○MRV 계획서	제 출 : 4점 미제출 : 2점	(4)	
4. 입찰가격			30	
합 계 (최고 점수)			100	
5. 가점 및 감점 항목	○사업자파이낸싱 성과보증방식에 의한 계약	○사업파이낸싱성과보증방식에 의한 계약 사업실적 여부	+1	【주 6】
	○에너지진단기관	○에너지진단기관 지정 여부	+1	
	○기술개발	○기술개발실적 여부	+1	
	○결격사유	○ESCO등록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으로 부터 자금지원 지침에 따른 사후관리 위반으로 자금추천제외 조치 중인 경우	-2	

붙임-3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평가기준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1. 사업효과	○에너지 절감율	최대 1위 : 10점 2위 : 9점 3위 : 8점 4위 : 7점 5위이하 : 6점	(10)	【주 1】
	○투자비 회수기간	최단 1위 : 10점 2위 : 9점 3위 : 8점 4위 : 7점 5위이하 : 6점	(10)	
	○절감량	최대 1위 : 4점 2위 : 3.5점 3위 : 3점 4위 : 2.5점 5위이하 : 2점	(4)	
	○상환배분율	최대 1위 : 4점 2위 : 3.5점 3위 : 3점 4위 : 2.5점 5위이하 : 2점	(4)	
소 계			28	
2. 당해용역 수행능력	가. 사업 경험 ○당해용역규모 (금액)대비 사업실적	실적 100%이상 : 9점 85%이상 : 8점 70%이상 : 7점 50%이상 : 6점 50%미만 : 5점	(9)	【주 2】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2. 당해용역 수행능력	나. 경영 상태			【주 3】
	○부채비율	평균 미만 : 3점 평균 이상 : 1.5점	(3)	
	○매출액 순이익율	평균 이상 : 2점 평균 미만 : 1점	(2)	
	다. 신인도			【주 4】
	○ISO국제품질 인증	인증 획득 : 2점 미인증 : 0.5점	(2)	
소 계			16	
3. 사후관리	○하자보증기간	투자비회수기간 또는 에너지사용자 지정기간 이상 : 3점 투자비회수기간 또는 에너지사용자 지정기간 미만 : 1.5점	(3)	【주 5】
	○MRV 계획서	제 출 : 3점 미제출 : 1.5점	(3)	
	소 계			6
4. 입찰가격			50	
합 계 (최고 점수)			100	
5. 가점 및 감점 항목	○사업자파이낸싱 성과보증방식에 의한 계약	○사업파이낸싱성과보증방식에 의한 계약 사업실적 여부	+1	【주 6】
	○에너지진단기관	○에너지진단기관 지정 여부	+1	
	○기술개발	○기술개발실적 여부	+1	
	○결격사유	○ESCO등록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으로 부터 자금지원 지침에 따른 사후관리 위반으로 자금추천제외 조치 중인 경우	-2	

붙임-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평가기준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1. 사업효과	○에너지 절감율	최대 1위 : 6점 2위 : 5점 3위 : 4점 4위 : 3점 5위이하 : 2점	(6)	【주 1】
	○투자비 회수기간	최단 1위 : 6점 2위 : 5점 3위 : 4점 4위 : 3점 5위이하 : 2점	(6)	
	○절감량	최대 1위 : 3점 2위 : 2.5점 3위 : 2점 4위 : 1.5점 5위이하 : 1점	(3)	
	○상환배분율	최대 1위 : 2점 2위 : 1.5점 3위 : 1점 4위이하 : 0.5점	(2)	
소 계			17	
2. 당해용역 수행능력	가. 사업 경험 ○당해용역규모 (금액)대비 사업실적	실적 75%이상 : 6점 65%이상 : 5점 55%이상 : 4점 40%이상 : 3점 40%미만 : 2점	(6)	【주 2】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2. 당해용역 수행능력	나. 경영 상태			【주 3】
	○부채비율	평균 미만 : 1점 평균 이상 : 0.5점	(1)	
	○매출액 순이익율	평균 이상 : 1점 평균 미만 : 0.5점	(1)	
	다. 신인도			【주 4】
	○ISO국제품질 인증	인증 획득 : 1점 미인증 : 0.5점	(1)	
소 계			9	
3. 사후관리	○하자보증기간	투자비회수기간 또는 에너지사용자 지정기간 이상 : 2점 투자비회수기간 또는 에너지사용자 지정기간 미만 : 1점	(2)	【주 5】
	○MRV 계획서	제 출 : 2점 미제출 : 1점	(2)	
	소 계			4
4. 입찰가격			70	
합 계 (최고 점수)			100	
5. 가점 및 감점 항목	○사업자파이낸싱 성과보증방식에 의한 계약	○사업파이낸싱성과보증방식에 의한 계약 사업실적 여부	+1	【주 6】
	○에너지진단기관	○에너지진단기관 지정 여부	+1	
	○기술개발	○기술개발실적 여부	+1	
	○결격사유	○ESCO등록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으로 부터 자금지원 지침에 따른 사후관리 위반으로 자금추천제외 조치 중인 경우	-2	

붙임-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평가기준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1. 사업효과	○에너지 절감율	최대 1위 : 4점 2위 : 3.5점 3위 : 3점 4위 : 2.5점 5위이하 : 2점	(4)	【주 1】
	○투자비 회수기간	최단 1위 : 4점 2위 : 3.5점 3위 : 3점 4위 : 2.5점 5위이하 : 2점	(4)	
	○절감량	최대 1위 : 2점 2위 : 1.5점 3위 : 1점 4위이하 : 0.5점	(2)	
	○상환배분율	최대 1위 : 2점 2위 : 1.5점 3위 : 1점 4위이하 : 0.5점	(2)	
	소 계		12	
2. 당해용역 수행능력	가. 사업 경험 ○당해용역규모 (금액)대비 사업실적	실적 75%이상 : 3점 65%이상 : 2.5점 55%이상 : 2점 40%이상 : 1.5점 40%미만 : 1점	(3)	【주 2】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2. 당해용역 수행능력	나. 경영 상태			【주 3】
	○부채비율	평균 미만 : 1점 평균 이상 : 0.5점	(1)	
	○매출액 순이익율	평균 이상 : 1점 평균 미만 : 0.5점	(1)	
	다. 신인도			【주 4】
	○ISO국제품질 인증	인증 획득 : 1점 미인증 : 0.5점	(1)	
소 계			6	
3. 사후관리	○하자보증기간	투자비회수기간 또는 에너지사용자 지정기간 이상 : 1점 투자비회수기간 또는 에너지사용자 지정기간 미만 : 0.5점	(1)	【주 5】
	○MRV 계획서	제 출 : 1점 미제출 : 0.5점	(1)	
	소 계			2
4. 입찰가격			80	
합 계 (최고 점수)			100	
5. 가점 및 감점 항목	○사업자파이낸싱 성과보증방식에 의한 계약	○사업파이낸싱성과보증방식에 의한 계약 사업실적 여부	+1	【주 6】
	○에너지진단기관	○에너지진단기관 지정 여부	+1	
	○기술개발	○기술개발실적 여부	+1	
	○결격사유	○ESCO등록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으로 부터 자금지원 지침에 따른 사후관리 위반으로 자금추천제외 조치 중인 경우	-2	

붙임-6

추정가격 3억원 미만 평가기준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1. 사업효과	○에너지 절감율	최대 1위 : 1점 2위 : 0.75점 3위 : 0.5점 4위 이하 : 0.25점	(1)	【주 1】
	○투자비 회수기간	최단 1위 : 1점 2위 : 0.75점 3위 : 0.5점 4위 이하 : 0.25점	(1)	
	○절감량	최대 1위 : 1점 2위 : 0.75점 3위 : 0.5점 4위 이하 : 0.25점	(1)	
	○상환배분율	최대 1위 : 1점 2위 : 0.75점 3위 : 0.5점 4위 이하 : 0.25점	(1)	
	소 계		4	
2. 당해용역 수행능력	가. 사업 경험			【주 2】
	○당해용역규모 (금액)대비 사업실적	실적 50%이상 : 2점 40%이상 : 1.75점 30%이상 : 1.5점 20%이상 : 1.25점 20%미만 : 1점	(2)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2. 당해용역 수행능력	나. 경영 상태			【주 3】
	○부채비율	평균 미만 : 0.5점 평균 이상 : 0.25점	(0.5)	
	○매출액 순이익율	평균 이상 : 0.5점 평균 미만 : 0.25점	(0.5)	
	다. 신인도			【주 4】
	○ISO국제품질 인증	인증 획득 : 1점 미인증 : 0.5점	(1)	
소 계			4	
3. 사후관리	○하자보증기간	투자비회수기간 또는 에너지사용자 지정기간 이상 : 1점 투자비회수기간 또는 에너지사용자 지정기간 미만 : 0.5점	(1)	【주 5】
	○MRV 계획서	제 출 : 1점 미제출 : 0.5점	(1)	
	소 계			2
4. 입찰가격			90	
합 계 (최고 점수)			100	
5. 가점 및 감점 항목	○사업자파이낸싱 성과보증방식에 의한 계약	○사업파이낸싱성과보증방식에 의한 계약 사업실적 여부	+1	【주 6】
	○에너지진단기관	○에너지진단기관 지정 여부	+1	
	○기술개발	○기술개발실적 여부	+1	
	○결격사유	○ESCO등록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으로 부터 자금지원 지침에 따른 사후관리 위반으로 자금추천제외 조치 중인 경우	-2	

【주 1】

- ESCO는 현장설명시 에너지사용자가 제시한 해당시설의 연간 가동시간, 에너지단가 (부가세 포함) 등을 적용하여 에너지절감율, 투자비회수기간, 상환기간, 상환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에너지사용자는 성과보증 방식의 계약의 경우 성과보증률((보증절감량(액) ÷ 목표 절감량(액))로 80% 이상)을 미리 결정하여 제시할 수 있다.
- 에너지절감율은 시설투자 전후 에너지사용량의 차이에 대한 백분율로써[(투자전 에너지사용량 - 투자후 에너지사용량) ÷ (투자전 에너지사용량) × 100](%)의 계산 식을 사용하고 절감율이 높은 순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 투자비회수기간은 (응찰자가 제시한 공사비) ÷ (예상에너지절감금액(성과확정) 또는 보증에너지절감금액(성과보증))으로 계산하고 짧은 기간을 제시한 업체에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 에너지 절감량은 예상절감량(성과확정) 또는 보증절감량(성과보증)을 많이 제시한 업체에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 상환금액 산정은 (상환원금+이자+부가세)로써 매 월단위로 하며 상환원금은 예상 에너지절감금액(성과확정) 또는 목표에너지절감금액(성과보증)을 초과할 수 없고 적은 금액일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 상환배분율의 산정은 (연간 예상에너지절감금액(성과확정) 또는 연간 보증에너지 절감금액(성과보증)/연간 상환액)로써 높은 비율일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단, 상환배분율 최대값은 1.0 이하로 한다.).
- 투자시설의 규격, 사양 등이 미리 결정되고 특별히 사업효과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모두 최고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주 2】

- 최근 3년간 합산 실적(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을 지원받아 수행한 사업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이외의 자금으로 수행한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득한 에너지 절약전문기업협회(이하 “ESCO협회”라 한다.)에서 ESCO 투자사업으로 인정한 사업에 대한 실적)으로서 ESCO협회에서 발급하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실적확인서’에 의하며, ‘최근 3년간’의 기준은 입찰공고일 직전 분기말을 기준으로 한다.

【주 3】

- 부채비율 및 매출액 순이익율은 당해 입찰공고일로부터 소급한 최근2년간의 결산 보고서 또는 ESCO 협회에서 발급한 최근 2년간의 업체별 부채비율 및 매출액 순이익율 확인서에 의한다.
- 평균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ESCO 투자실적이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여 ESCO협회에서 발표한 업계평균을 적용하되, 순이익이 (-)인 업체, 매출액이 없는 업체 및 창업후 결산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결산을 하지 못한 업체의 경우에는 해당항목의 산술평균치 계산시 제외하여 계산한다.
- 창업 후 2년간의 결산자료가 없는 업체의 경우에는 1년간의 결산자료 만으로 평가한다.
- 순이익이 (-)인 업체, 매출액이 없는 업체 및 창업 후 결산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결산을 하지 못한 업체의 해당항목 평가는 평균미만 점수를 부여한다.
- 부채비율은 [총부채총액 ÷ 자기자본]으로 계산한다.
- 매출액 순이익율은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 총매출액]으로 계산한다.

【주 4】

- 해당 공사 관련 국내·외 공인 인증서 사본에 의한다.

【주 5】

- 하자보증기간과 투자비회수기간 또는 에너지사용자지정기간(별도기간 지정 시)을 비교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 사후관리계획서에 포함된 'MRV 계획서'의 제출 여부로 점수를 부여한다.

【주 6】

- 가점 항목은 적격심사대상자의 '사업효과, 당해용역수행능력, 사후관리'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방식방식에 의한 계약 사업실적은 ESCO협회에서 발급하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실적확인서'에서 최근 3년간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방식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ESCO투자사업 실적이 3건 이상일 경우에 가점을 부여한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 가점을 부여한다.

- 기술개발 실적은 참여ESCO가 최근 3년 이내에 기술표준원에서 발행하는 신기술 (NET, NEP) 인증,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발행하는 녹색인증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행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 가점을 부여한다.
- ESCO등록이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공단이사장으로 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산업통상자원부공고)에 따라 사후관리 위반으로 자금 추천지원제외 조치 중인 경우에 감점을 부여한다.

붙임-1

계약일반조건

제1조 [계약목적]

- ① 본 계약일반조건은 ESCO투자사업 성과확정 표준계약서의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성과확정방식에 바탕을 둔 ESCO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② 본 계약의 적용범위는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한 성과확정계약 대상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조 [용어정의]

- ①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에너지사용자”(이하 “갑”이라 한다) 라 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2.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 “을”이라 한다) 이라 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말한다.
 3.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라 함은 에너지사용시설 또는 공정을 에너지절약 시설 또는 공정으로 개조, 보완, 대체, 신설, 증설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에너지절감량(액)”이라 함은 에너지절약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에너지사용량 또는 에너지비용의 감소를 말한다.
 5. “예상절감량(액)”이라 함은 성과확정을 위하여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절약시설 설치 이전에 에너지진단 또는 기타 방법으로 산출한 에너지절감량(액)을 에너지사용자가 확인 후 최종 확정된 에너지절감량(액)을 말한다.
 6. “성과확정”이라 함은 초기 투자비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조달하고 예상절감량(액)을 바탕으로 투자비 상환계획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사업금액”이라 함은 에너지절약 성과확정사업에 소요되는 에너지관리진단비용, 설치금액, 사후관리비용 및 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포함하는 총 비용을 말한다.
 8. “총 사업기간”이라 함은 ESCO투자사업 성과확정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갑”이 “을”에게 사업금액을 상환 완료한 날까지를 말한다.
 9. “설치기간”이라 함은 ESCO투자사업 성과확정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에너지절약시설설치가 완료되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검사를 종료한 날 까지

말한다.

10. “상환기간”이라 함은 설치기간 종료 이후부터 “갑”이 “을”에게 사업금액을 상환 완료한 날까지를 말한다.

②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한다. 단,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ESCO투자사업의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과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다음 각호의 문서로 구성되며 각 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1. 계약일반조건 1부
2. 사업내역서 1부
3. 특별시방서 1부
4. 예상에너지절감량 산출서 1부
5. 하자보증서 1부
6. 사후관리계획서 1부
7. 예상에너지절감량 확인서 1부
8. 투자비상환계획서 1부
9. ESCO 매출채권 양도 승낙 확인서(양도시만 첨부) 1부

② “갑”과 “을”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제1항에 의한 계약문서 중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첨부할 수 있다. 단 제1호 내지 제5호의 문서는 예외로 한다.

제4조 [에너지절약설치 이행보증]

① “을”은 당해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설치금액의 (/100)에 해당 되는 금액을 계약체결일까지 “갑”에게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내용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치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이행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설치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이행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을”은 설치기간이 연장된 경우 “갑”이 정하는 기일 내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보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약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이행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약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이행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갑”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설치완료검사 결과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을”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 내용의 변경]

①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갑”은 “을”에게 서면으로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해 협의할 것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을”은 “갑”과의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로 사업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의거 정산한다.

1. 계약내용에 포함된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내용이나 용역의 변경은 붙임의 “사업내역서”상의 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한다.
2.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내용이나 용역이 발생할 때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 [계약의 해약]

① “갑”은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에 착수하지 않거나 또는 당해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계약의 해약으로 인한 손실금액에 대하여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갑”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때 손실금액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다.

② “갑”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약할 경우 “을”은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해약시점까지 투입된 “을”의 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갑”의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갑”은 계약해약 시점까지 실제 소요비용 중 기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이 계약에서 정한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비용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투자비상환 계획서에 의한 상환금액을 발생일로부터 ()월 이상 지급 받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제13조의 투자비상환 계획서에 의한 상환금액 중 기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일체를 계약해약 시점에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갑”과 “을”은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손해배상]

- ① “을”은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불이행, 지연 또는 이행보증금 이상의 하자보수 등으로 발생하는 “갑”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작업 중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인적, 물적 사고와 “갑”의 시설물 훼손 및 분실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과 원상복구는 “을”의 책임으로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을”은 “갑”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③ “을”은 사업현장에서 발견되는 위험물질 또는 위험요소의 적절한 제거 및 처리를 책임진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은 현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8조 [착공 및 공정보고]

- ① “을”은 계약문서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갑”이 지정한 사항이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을”은 “갑”이 요구할 경우 “갑”이 지정한 사항이 포함된 공정현황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지체상금]

- ① “을”은 계약서에 정해진 설치기간 내에 에너지절약설치 완료에 대한 검사를 득하지 못할 때에는 설치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매 지체일 당 사업금액의 (/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사유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또는 “갑”의 사정 등 “을”의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 지체상금은 면제된다.
- ③ 지체상금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을”이 “갑”에게 납부한 이행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한 경우 “갑”은 “갑”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10조 [소요 자재의 반입 및 검사]

- ①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자재는 불임의 “특별시방서”에 따르며 “갑”과 “을”의 합의 하에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 ②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 또는 작업 전에 “갑”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대체품으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 ③ “을”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대체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 “을”은 사전에 상세 내역을 “갑”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대체품의 품질은 규정

품목의 동등 또는 이상의 수준으로 한다.

제11조 [완료검사 및 각 공정별 완료검사]

- ① 완료검사는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완료 후 “을”의 완료확인 및 완료검사 요청에 의하여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한다.
- ② 각 공정별 완료검사는 “갑”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을”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시 검사는 작업 진도 또는 적정자재 사용 여부 및 계약문서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제12조 [폐자재 처리]

- ①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은 처리비용이 사업금액에 포함된 경우 “을”의 책임 하에 적법하게 처리하고 “을”은 폐기물처리 확인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단, 동 처리비용이 사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갑”이 지정한 장소로 “을”이 이동하도록 한다.
- ② 철거된 폐자재 중 사용가능품은 “갑”의 요청시 “을”이 수거하여 “갑”에게 반납하고 불량품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을”이 처리한다.

제13조 [예상에너지절감량(액) 확인 및 투자비 상환]

- ① “을”은 “갑”에게 불임의 예상에너지절감량(액) 산출 기준·방법·결과 및 동 예상에너지절감량(액) 기준으로 투자비가 상환됨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② “갑”과 “을”은 제1항에 따른 예상에너지절감량(액) 및 투자비 상환계획을 상호 합의하고 확정하기 위하여 불임의 예상에너지절감량 확인서 및 불임의 투자비상환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갑”은 동 상환계획서에 의거하여 투자비를 상환한다.
- ③ “갑”이 특별한 사유 없이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과 합의된 시점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갑”은 해당 상환금에 연리 ()%의 이자를 포함하여 “을”에게 지급한다.

제14조 [지급이자]

- ① “갑”은 “을”이 한국에너지공단에 자금을 신청하면 평가결과에 따라 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 ② 제13조 제2항에 따른 상환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을”이 투자비 조달시 민간자금으로 조달가능한 연리 ()%의 이자로 “갑”이 “을”에게 지급한다.

- ③ 계약 후 “을”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2항의 지급이자를 해당자금 금리로 수정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15조 [매출채권의 양도] - (매출채권 양도시만)

- ① “을”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ESCO 매출채권을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매출채권 양도를 승낙하는 등 이에 수반된 제반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을”은 ESCO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에게 ESCO 매출채권 양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한 후 “갑”의 승낙을 받아 붙임의 ESCO 매출채권 양도 승낙 확인서를 계약서에 첨부해야 한다.
- ③ “갑”은 본 계약과 관련한 ESCO 매출채권 양도의 승낙은 매출채권을 양도한 금융기관에게 제13조에 따른 예상에너지절감량(액) 및 제 16조에 따른 사후관리 및 하자보증 책임을 요구할 수 없음을 확인하며, 또한 매출채권 양도 승낙한 금액 일체를 확정채권으로 인정하여 붙임의 투자비 상환계획서에 따라 금융기관에 어떠한 이의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을”은 ESCO 매출채권 양도후에도 “갑”에게 제 16조에 따른 사후관리 및 하자보증을 계약된 기간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 [사후관리 및 하자보증]

- ① 에너지절약설치의 사후관리는 설치완료 검사일을 개시일로 하여 붙임의 “사후관리 계획서”에 의거 시행토록 한다.
- ② “을”은 “갑”의 하자통보 즉시 설비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갑”의 승인을 득한 후 신속히 보수하여야 한다.
- ③ 하자이행 보증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갑”의 사용상 부주의 또는 천재지변 등 “을”의 귀책에 따라 발생한 하자가 아닌 경우에는 “갑”의 부담으로 복구한다.
- ④ 붙임의 “사후관리계획서”에 명시된 관리 이외의 관련법규에 의한 정기적인 검사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여야 할 경우, 제반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7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의 엄수 의무]

- ① “갑”은 본 계약에 의하여 “을”이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또는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갑”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반드시 “을”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을”은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갑”의 정보를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로 누설할 수 없으며, “을”의 고용인에 대해서도 “갑”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토록 관리한다.

제18조 [분쟁해결]

-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해 해결한다.
- ② 분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붙임-2

사업내역서

비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I. 시 설 설 치 비				
1.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소 계			
2.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3. 경 비				
4. 일반관리비 ()%				
5. 이 윤 ()%				
II. 에너지관리진단비				
1. 직 접 인 건 비				
2. 직 접 경 비				
3. 제 경 비				
4. 기 술 료				
III. 사후관리비				
1. 재 료 비				
2. 노 무 비				
3. 경 비				
4. 일반관리비				
IV. 지 급 이 자				
V. 총 원 가				

<별첨> 상세내역서

붙임-3

특 별 시 방 서

(조명교체공사 예시)

1. 일반사항

본 ESCO투자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요구되는 각 교실의 조도는 책상윗면을 기준으로 측정되었을 때 다음과 같아야 한다.

장 소	기존(Lux)	개선(Lux)	비 고
가 교실	200	320	
나 교실	190	320	

2. 전자식 안정기

2.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0000에서 시행하는 에너지절약 성과확정사업의 (고효율 조명기기)분야에 적용한다.

2.2 종류와 적용규격

1) 종류

품명	규격	비 고
전자식 안정기	32W×1등용	삼파장 형광램프용 효율 2등급 이상
전자식 안정기	32W×2등용	삼파장 형광램프용 효율 2등급 이상

2) 적용규격

KS C 0262(전기 전자기기의 전자파 장애 시험), KS C 8100(형광램프용 전자식 안정기)

2.3 제작 특수 사양

- 1) 본 전자식 안정기의 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무선, 신호, 각종 통신설비에 전자파의 장애가 발생할 시 기기의 안전운용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 안정기의 성능을 KS C 8100의 기준 이상으로 제한함

잡음전계강도		잡음단자전압	
주파수범위(MHz)	KS C 8100 허용치(dB)	주파수범위(MHz)	KS C 8100 허용치(dB)
30이상 88이하	39.0	0.010~0.285	-
88초과 216이하	43.5	0.285~0.450	-
216초과960이하	46.5	0.450~1.705	60.0
960초과	54.0	1.705~3.950	69.5
-	-	3.950~3.000	69.5

- 2) 사업 수행 시 사용할 안정기의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위와 같은 양식의 기록 첨부요
-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소비 효율 2등급 이상인 제품으로 한국전력공사의 고효율조명기기기술규격<전자식 안정기>에 의한 『고』 마크 취득품 일 것
- 4) 진동과 기온차, 습기침투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안정기 자체에 외부 Surge를 감소시키기 위한 회로가 내장되어 있을 것
- 5) 본 안정기의 전류 고조파 함유율은 저고조파 함유형(함유율 20%이하)일 것
- 6) 안정기는 일일 사용시간을 20시간으로 산정 했을 때 5년간 하자보증이 되어야 하며, 10년 이상 품질 보증을 하여야 한다.

3. 형광램프

3.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0000에서 시행하는 에너지절약 성과확정사업의 (고효율 조명기기)분야에 적용한다.

3.2 종류와 적용규격

- 1) 종류 : 삼파장 형광램프(220V/32W 전자식 안정기용 램프)
- 2) 적용규격 : KS C 7601

3.3 본 램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일반기기의 운용에 영향이 없도록 잡음전계강도 및 잡음 단자전압의 허용치를 다음과 같이 제한코자 함

잡음전계강도		잡음단자전압	
주파수 범위	허용치 dB	주파수 범위	허용치 dB
450kHz이상 1,650kHz이하	20	450KHz이상 5MHz이하	56
1,650KHz초과 30MHz이하	25	5MHz초과 30MHz이하	60
30MHz초과 1,000MHz이하	30	-	-

※ dB는 1 μ V/m를 0dB로 하여 산출한 값임

- 1) 사용코자 하는 제품명 및 시험성적서 첨부
- 2) 형광램프의 수명은 16,000시간 이상을 보증 하여야 한다.

4. 시험

설치되는 에너지절약기기에 대하여 다음 항목을 시험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

- 1) 외관구조 및 치수
- 2) 절연저항 및 내전압
- 3) 역률
- 4) 입력전류 및 소비전력
- 5) 도면별첨

붙임-4

예상에너지절감량 산출서(예시)

□ 설비개요

【변경 전】

구분	기 기 명	규 격 (모델명)	수량	에너지 소비량	효율	가동시간 (시간/년)	총 에너지 소비량	비 고 (부하율 등)
전기								
열								

【변경 후】

구분	기 기 명	규 격 (모델명)	수량	에너지 소비량	효율	가동시간 (시간/년)	총 에너지 소비량	비 고 (부하율 등)
전기								
열								

□ 변경전 에너지사용량

- 기준연도 : (년)
- 기준가격 : 전기단가 : 원/kWh, 연료단가 : 원/ℓ (원/Nm³)

구분	전기사용량					열사용량(사용연료 :)				에너지 비용합계 (원)
	소비전력 (kW)	가동시간 (시간)	사용 전력량 (kWh)	전력단가 (원/kWh)	전력요금 (원)	사용량 (Nm³, ℓ)	가동시간 (시간)	단가 (원/Nm³, ℓ)	연료비용 (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 변경후 예상에너지 사용량

○ 기준가격 : (전기단가) 원/kWh, (연료단가) 원/ℓ (원/Nm³)

구분	전기사용량					열사용량(사용연료 :)				에너지 비용합계 (원)
	소비전력 (kW)	가동시간 (시간)	사용 전력량 (kWh)	전력단가 (원/kWh)	전력요금 (원)	사용량 (Nm ³ , ℓ)	가동시간 (시간)	단가 (원/Nm ³ , ℓ)	연료비용 (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 예상에너지절감량

구분	예상에너지절감량	예상에너지절감액
전기	(toe/년 kWh/년)	천원/년
열	(toe/년 ℓ/년)	천원/년
합계	toe/년	천원/년

□ 기타 특이사항(예시)

- 기존 에너지사용량 산출 근거 : 상세 내용 별첨 에너지진단보고서 참조
 - 기존 에너지사용량은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2년간 지출된 실제 에너지비용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한다.
- 변경후 에너지사용량 산출은 에너지 단가, 부하량 및 운전시간 등은 동일한 것으로 본다.
 - 시설 변경 전후 운전시간 등 부하량은 일정한 것으로 본다. 즉 부하량 변동으로 인해 변화되는 에너지소비량은 절감량 산출시 제외한다.

〈별첨〉 에너지진단보고서 : ESCO 또는 에너지진단기관이 수행한 보고서에서 당해사업 부분만 발취하여 별첨

붙임-5

하 자 보 증 서

1.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명시된 에너지절약설치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을 아래와 같이 보증한다. 하자보수보증기간의 시점은 에너지절약설치의 완료검사일을 개시일로 한다.
2. “을”은 각 제품 또는 성능개선의 하자보증서를 “갑”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계약 양 주체의 합의하에 생략될 수 있다.

“갑”

인

“을”

인

번호	내 용	개시일	종료일

붙임-6

사 후 관 리 계 획 서

조명교체공사 예

“을”은 본 사업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에너지절약설치 사후 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갑”

인

“을”

인

1. 관리의 범위

사후관리 대상은 000에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를 완료한 현장을 대상으로 하며 수량은 아래와 같다.

번호	제품명	수량	관리기간(기간 또는 사용시간)
1	전자식 안정기 2등용	12,570	5년
2	전자식 안정기 1등용	1,458	5년
3	고조도반사갓	422	5년
4	삼파장 형광램프	26,598	1년

2. 시행업무 구분

“갑”은 관리대상에 대한 점검 순회와 “을”이 시행하는 사항에 대하여 원활을 기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출입, 작업조건부여)을 하여야 한다. “을”은 에너지절약시설의 성능 보증 및 필요 성능의 유지를 위해 아래 사항을 측정하여야 한다.

- 1) 에너지절감량
- 2) 조도

3. 관리내용 및 보고

“을”은 에너지 절약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아래 내용을 상환자금 청구 시 제출 하여 “갑”의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주기별 보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시 기	보 고 내 용
1분기	에너지절감량, 조도
2분기	에너지절감량, 조도
3분기	에너지절감량, 조도
4분기	에너지절감량, 조도

4. 에너지절감량 측정

- 1) 측정 항목 : 전력사용량
- 2) 측정 장소 : “갑”의 지정장소, 1개소
- 3) 측정 시기 : 년 4회(“갑” 지정하는 시점 시행)
- 4) 측정 장비 : 파워미터

5. 조도 측정

- 1) 측정 항목 : 조도
- 2) 측정 장소 : “갑”의 지정장소, 3개소
- 3) 측정 시기 : 년 4회(자금환수 청구 시 제출)
- 4) 측정 장비 : 조도계

6. 에너지절약시설 유지관리

“갑”은 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 불량여부 발견되면 즉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을”에게 통보하며, “을”은 시설물 불량사항을 접수 즉시 수리하고 작업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붙임-7

예상에너지절감량 확인서

“을”은 본 계약서에 명시된 에너지절약설치에 의한 연간 예상에너지절감량을 첨부
 “예상에너지절감량 산출근거”에 의거 산출하여 아래와 같이 “갑”에게 제시하고, “갑”은
 제시된 연간 예상에너지절감량에 동의하며 본 계약의 내용과 일치함을 확인한다.

“갑”

인

“을”

인

번호	시설명	수량	예상에너지절감량 (toe/년, MWh/년)	예상에너지절감액 (천원/년)
합계				

붙임-8

투자비상환계획서

1. “갑”과 “을”은 본 계약서의 제13조[예상에너지절감량 확인 및 투자비 상환]에 따른 투자비 상환계획을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2. 상환은 “을”이 지정한 00은행 xxx-xx-xxxxxxx계좌(예금주: 000)로 매월(분기) xx일까지 입금한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투자비의 상환은 준공 된 20xx년 x월 부터 시작된다.

“갑”

인

“을”

인

사업금액 :

상환기간 :

상 환 액 :

상환금리 :

회차	일자	상환액	상환액누계	회차	일자	상환액	상환누계액

붙임-9

ESCO 매출채권 양도 승낙 확인서	
ESCO투자사업 성과확정계약에 따라 에너지사용자는 아래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ESCO 매출채권 양도를 승낙하는 것을 확인합니다.(확인 후 ☑)	<input type="checkbox"/>
○ ESCO가 금융기관에 ESCO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것에 대해 에너지사용자는 ESCO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 에너지사용자는 ESCO 매출채권 양도 후, 예상에너지절감액이 부족하거나 기타의 사유와 상관없이 매출채권 양도 승낙한 금액 일체를 투자비 상환계획서에 의거 전액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것(확정채권으로 인정)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 에너지사용자는 ESCO 매출채권 양도 후, 매출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상에너지절감량(액), 사후관리 및 하자보증 책임을 요구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 에너지사용자는 ESCO 매출채권 양도 후, 예상에너지절감량(액), 사후관리 및 하자보증 등의 책임이 금융기관이 아닌 ESCO에 있음을 인지하였고, 이와 관련된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input type="checkbox"/>
○ 에너지사용자는 ESCO 매출채권 양도를 승낙하며 이에 수반된 제반업무에 협조하겠습니다.	<input type="checkbox"/>
○ 매출채권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은 에너지사용자와 ESCO 협의에 의해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input type="checkbox"/>
년 월 일 에너지사용자(업체) 대표 : (성명)	(서명)

붙임-1

계약일반조건

제1조 [계약목적]

본 계약일반조건은 ESCO투자사업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 표준계약서의 에너지사용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 “을”이라 한다)이 성과보증제도에 바탕을 둔 ESCO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정의]

- ① 이 계약일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에너지사용자”라 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에법”이라 한다) 제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2.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라 함은 에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말한다.
 3.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라 함은 에너지사용시설 또는 공정을 에너지절약 시설 또는 공정으로 개조, 보완, 대체, 신설, 증설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에너지절감량(액)”이라 함은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에너지 사용량 또는 에너지비용의 감소를 말한다.
 5. “목표절감량(액)”이라 함은 “을”이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이전에 에너지진단이나 붙임의 “사후관리계획서” 또는 기타 방법에 따라 산출한 최대 에너지절감량(액)을 말한다.
 6. “성과보증”이라 함은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을 “을”이 “갑”에게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7. “보증절감량(액)”이라 함은 “을”이 성과보증을 위하여 “갑”에게 제시하는 에너지 절감량(액)을 말한다.
 8. “초과성과배분”이라 함은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결과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이 목표절감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달성에 따라 발생한 차액을 “갑”과 “을”이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9. “사업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에너지관리진단비용, 설치금액, 사후 관리비용 및 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포함하는 총 비용을 말한다.

10. “에너지사용자 직접구입금액”이라 함은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 계약과 연계 되어 에너지사용자가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설비 구입 비용을 말한다.
 11. “총 사업기간”이라 함은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에너지 절감액으로 사업금액을 전액 회수한 날 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 사후 관리기간 종료일까지를 말한다.
 12. “설치기간”이라 함은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에너지 절약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 “갑”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검사를 종료한 날 까지를 말한다.
 13. “성과보증기간”이라 함은 “갑”이 보증절감액으로 사업금액 전액을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말한다.
- ②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한다. 단,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ESCO투자사업의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과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계약문서]

- ① 본 계약문서는 다음 각 호의 문서로 구성되며 각 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1. 계약일반조건 1부
 2. 사업내역서 1부
 3. 특별시방서 1부
 4. 에너지절감량 산출서 1부
 5. 하자보증서 1부
 6. 사후관리계획서(MRV계획 포함) 1부
 7. 에너지절감량 보증서 1부
- ② “갑”과 “을”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제1항에 의한 계약문서 중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첨부할 수 있다. 단 제1호 내지 제5호의 문서는 예외로 한다.

제4조 [에너지절약설치 이행보증]

- ① “을”은 당해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설치금액의 (/100)에 해당 되는 금액을 계약체결일까지 “갑”에게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내용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치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이행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설치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이행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을”은 설치기간이 연장된 경우 “갑”이 정하는 기일 내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보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약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이행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약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이행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갑”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설치완료검사 결과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을”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내용의 변경]

- ①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갑”은 “을”에게 서면으로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해 협의할 것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을”은 “갑”과의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로 사업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의거 정산한다.
 - 1. 계약내용에 포함된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내용이나 용역의 변경은 붙임의 “사업내역서”상의 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한다.
 - 2.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내용이나 용역이 발생할 때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 [계약의 해약]

- ① “갑”은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에 착수하지 않거나 또는 당해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목적 달성을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계약의 해약으로 인한 손실금액에 대하여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갑”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때 손실금액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다.
- ② “갑”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약할 경우 “을”은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해약시점까지 투입된 “을”의 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갑”의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갑”은 계약해약 시점까지 실제 소요비용 중 기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③ “갑”과 “을”은 제1항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손해배상]

- ① “을”은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불이행, 지연 또는 이행보증금 이상의 하자보수 등으로 발생하는 “갑”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작업 중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인적, 물적 사고와 “갑”의 시설물 훼손 및 분실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과 원상복구는 “을”의 책임으로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을”은 “갑”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③ “을”은 사업현장에서 발견되는 위험물질 또는 위험요소의 적절한 제거 및 처리를 책임진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은 현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8조 [착공 및 공정보고]

- ① “을”은 계약문서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갑”이 지정한 사항이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을”은 “갑”이 요구할 경우 “갑”이 지정한 사항이 포함된 공정현황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지체상금]

- ① “을”은 계약서에 정해진 설치기간 내에 에너지절약설치 완료에 대한 검사를 득하지 못할 때에는 설치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매 지체일 당 사업금액의 (/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사유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또는 “갑”의 사정 등 “을”의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 지체상금은 면제된다.
- ③ 지체상금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을”이 “갑”에게 납부한 이행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한 경우 “갑”은 “갑”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10조 [소요 자재의 반입 및 검사]

- ①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자재는 불임의 “특별시방서”에 따르며 “갑”과 “을”의 합의 하에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 ②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 또는 작업 전에 “갑”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대체품으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 ③ “을”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대체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 “을”은 사전에 상세 내역을 “갑”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대체품의 품질은 규정

품목의 동등 또는 이상의 수준으로 한다.

제11조 [완료검사 및 각 공정별 완료검사]

- ① 완료검사는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완료 후 “을”의 완료확인 및 완료검사 요청에 의하여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한다.
- ② 각 공정별 완료검사는 “갑”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을”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시 검사는 작업 진도 또는 적정자재 사용 여부 및 계약문서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제12조 [폐자재 처리]

- ①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은 처리비용이 사업금액에 포함된 경우 “을”의 책임 하에 적법하게 처리하고 “을”은 폐기물처리 확인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단, 동 처리비용이 사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갑”이 지정한 장소로 “을”이 이동하도록 한다.
- ② 철거된 폐자재 중 사용가능품은 “갑”의 요청시 “을”이 수거하여 “갑”에게 반납하고 불량품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을”이 처리한다.

제13조 [성과보증]

- ① “을”은 성과보증을 위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검사를 실시한 이후 불임의 “사후관리계획서(MRV계획 포함)”에서 제시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에너지절감량을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갑”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 ② “갑”과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측정된 에너지절감액(이하 “측정절감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측정절감액이 보증절감액에 미달하는 경우 “을”은 보증절감액과 측정절감액의 차액을 “갑”에게 현금으로 보전하여야 한다.
 2. 측정절감액이 목표절감액을 상회하는 경우 측정절감액과 목표절감액의 차액을 “갑” ()%, “을” ()% 비율로 배분하며, “갑”은 “을”에게 배분된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측정절감액이 보증절감액과 목표절감액 사이에 해당되는 경우 “갑”과 “을”은 제1호 내지 제2호의 차액보전 및 초과성과배분의 의무를 갖지 아니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보전금액 또는 초과성과배분금액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 ④ “갑”과 “을”은 에너지절감량의 공정한 측정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 절감량의 측정을 ()에 위탁하여 실시토록 하며,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 부담한다.
- ⑤ “갑”과 “을”은 특별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차액보전액, 초과성과배분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된 시점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에 연리 ()%의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한다.
- ⑥ “갑”은 사업기간 종료 이전에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 당해 시설을 변경하거나 철거할 수 없다. 다만, “갑”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 시설을 철거할 경우 “갑”은 잔여기간 동안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후관리비용 등 미지급 금액을 일시에 지불하여야 한다.
- ⑦ “을”은 보증절감액과 측정절감액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가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사후관리 및 하자보증]

- ① 에너지절약설치의 사후관리는 설치완료 검사일을 개시일로 하여 붙임의 “사후관리 계획서”에 의거 시행토록 한다.
- ② “을”은 “갑”의 하자통보 즉시 설비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갑”의 승인을 득한 후 신속히 보수하여야 한다.
- ③ 하자이행 보증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갑”의 사용상 부주의 또는 천재지변 등 “을”의 귀책에 따라 발생한 하자가 아닌 경우에는 “갑”의 부담으로 복구한다.
- ④ 붙임의 “사후관리계획서”에 명시된 관리 이외의 관련법규에 의한 정기적인 검사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여야 할 경우, 제반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5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의 엄수 의무]

- ① “갑”은 본 계약에 의하여 “을”이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또는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갑”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반드시 “을”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을”은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갑”의 정보를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로 누설할 수 없으며, “을”의 고용인에 대해서도 “갑”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준수토록 관리한다.

제16조 [분쟁해결]

-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협의에 의해 해결한다.
- ② 분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붙임-2

사업내역서

비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I. 시 설 설 치 비				
1.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소 계			
2.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3. 경 비				
4. 일반관리비 ()%				
5. 이 윤 ()%				
II. 에너지관리진단비				
1. 직 접 인 건 비				
2. 직 접 경 비				
3. 제 경 비				
4. 기 술 료				
III. 사후관리비(MRV 포함)				
1. 재 료 비				
2. 노 무 비				
3. 경 비				
4. 일반관리비				
IV. 총 원 가				

<별첨> 상세내역서

붙임-3 특별시방서(별지 제1호 서식의 #붙임-3과 동일)

붙임-4

에너지절감량 산출서(예시)

□ 설비개요

【변 경 전】

구분	기 기 명	규 격 (모델명)	수량	에너지 소비량	효율	가동시간 (시간/년)	총 에너지 소비량	비 고 (부하율 등)
전기								
열								

【변 경 후】

구분	기 기 명	규 격 (모델명)	수량	에너지 소비량	효율	가동시간 (시간/년)	총 에너지 소비량	비 고 (부하율 등)
전기								
열								

□ 변경전 에너지사용량

- 기준연도 : () 년)
- 기준가격 : 전기단가 : 원/kWh, 연료단가 : 원/ℓ (원/Nm³)

구분	전기사용량					열사용량(사용연료 :)				에너지 비용합계 (원)
	소비전력 (kW)	가동시간 (시간)	사용 전력량 (kWh)	전력단가 (원/kWh)	전력요금 (원)	사용량 (Nm ³ , ℓ)	가동시간 (시간)	단가 (원/Nm ³ , ℓ)	연료비용 (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 변경후 에너지사용량

○ 기준가격 : (전기단가) 원/kWh, (연료단가) 원/ℓ (원/Nm³)

구분	전기사용량					열사용량(사용연료 :)				에너지 비용합계 (원)
	소비전력 (kW)	가동시간 (시간)	사용 전력량 (kWh)	전력단가 (원/kWh)	전력요금 (원)	사용량 (Nm³, ℓ)	가동시간 (시간)	단가 (원/Nm³, ℓ)	연료비용 (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 에너지절감량

구분	에너지절감량(목표)	에너지절감액(목표)	에너지절감량(보증)	에너지절감액(보증)
전기	toe/년 (kWh/년)	천원/년	toe/년 (kWh/년)	천원/년
열	toe/년 (ℓ /년)	천원/년	toe/년 (ℓ /년)	천원/년
합계	toe/년	천원/년	toe/년	천원/년

□ 기타 특이사항(예시)

- 기존 에너지사용량 산출 근거 : 상세 내용 별첨 에너지진단보고서 참조
 - 기존 에너지사용량은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2년간 지출된 실제 에너지비용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한다.
- 변경후 에너지사용량 산출은 에너지 단가, 부하량 및 운전시간 등은 동일한 것으로 본다.
 - 시설 변경 전후 운전시간 등 부하량은 일정한 것으로 본다. 즉 부하량 변동으로 인해 변화되는 에너지소비량은 절감량 산출시 제외한다.

<별첨> 에너지진단보고서 : ESCO 또는 에너지진단기관이 수행한 보고서에서 당해사업 부분만 발췌하여 별첨

붙임-5 하자보증서(별지 제1호 서식의 #붙임-5와 동일)

붙임-6

사 후 관 리 계 획 서(MRV 포함)

조명교체공사 예

“을”은 본 사업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에너지절약설치 사후 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갑”

인

“을”

인

1. 관리의 범위

사후관리 대상은 000에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를 완료한 현장을 대상으로 하며 수량은 아래와 같다.

번호	제품명	수량	관리기간(기간 또는 사용시간)
1	전자식 안정기 2등용	12,570	5년
2	전자식 안정기 1등용	1,458	5년
3	고조도반사갓	422	5년
4	삼파장 형광램프	26,598	1년

2. 시행업무 구분

“갑”은 관리대상에 대한 점검 순회와 “을”이 시행하는 사항에 대하여 원활을 기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출입, 작업조건부여)을 하여야 한다. “을”은 에너지절약시설의 성능 보증 및 필요 성능의 유지를 위해 아래 사항을 측정하여야 한다.

- 1) 에너지절감량
- 2) 조도

3. 관리내용 및 보고

“을”은 에너지 절약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아래 내용을 상환자금 청구 시 제출 하여 “갑”의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주기별 보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시 기	보 고 내 용
1분기	에너지절감량, 조도
2분기	에너지절감량, 조도
3분기	에너지절감량, 조도
4분기	에너지절감량, 조도

4. 에너지절감량 측정

- 1) 측정 항목 : 전력사용량
- 2) 측정 장소 : “갑”의 지정장소, 1개소
- 3) 측정 시기 : 년 4회(“갑” 지정하는 시점 시행)
- 4) 측정 장비 : 파워미터

5. 조도 측정

- 1) 측정 항목 : 조도
- 2) 측정 장소 : “갑”의 지정장소, 3개소
- 3) 측정 시기 : 년 4회(자금환수 청구 시 제출)
- 4) 측정 장비 : 조도계

6. 에너지절약시설 유지관리

“갑”은 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 불량여부 발견되면 즉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을”에게 통보하며, “을”은 시설물 불량사항을 접수 즉시 수리하고 작업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별첨〉 MRV 계획서

〈별첨〉 MRV 계획서(예시)

MRV 계획서

I. MRV 계획(내용 포함)

1. 전체 프로젝트의 MRV계획 요약
2. 세부 사업별 MRV 계획 및 절감량 계산
3. 세부 사업별 베이스라인 설정방법 및 정량화 방법
4. 베이스라인 계획 세부 자료
 - (1) 모니터링 주요 인자
 - (2) 세부 데이터 분석 방법
 - (3) 모니터링 장비
 - (4) 모니터링 시스템 및 다이어그램
 - (5) 샘플링 계획
5. 사업후 모니터링 계획 세부 자료
 - (1) 모니터링 주요 인자
 - (2) 세부 데이터 분석 방법
 - (3) 모니터링 장비
 - (4) 모니터링 시스템 및 다이어그램
 - (5) 샘플링 계획
6. 제안된 절감량 계산 방법
7. 유지 및 관리 계획서

II. MRV 결과(결과를 작성할 수 있는 양식만 설정)

1. 해당 년도 에너지 및 비용 절감액 달성도
2. 세부 사업별 MRV 결과 및 절감량 계산방법
3. 세부 사업별 MRV 결과 및 절감량 계산
4. 세부 사업별 베이스라인 설정방법 및 정량화 방법
5. 베이스라인 모니터링 결과 세부 자료
 - (1) 모니터링 주요 인자
 - (2) 세부 데이터 분석 방법
 - (3) 모니터링 장비
 - (4) 모니터링 시스템 및 다이어그램
 - (5) 샘플링 결과
6. 제안된 절감량 계산 방법
7. 유지 및 관리 결과서

III. 에너지 사용량 세부데이터

붙임-7

에너지절감량 보증서

(갑)

인

(을)

인

“을”은 “갑”이 본 계약서에 명시된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하여 연간 천원 (toe)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을 보증하며, 에너지절감액(량)이 상기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본 계약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갑”에게 차액을 배상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에너지절감액(량)이 상기 기준을 초과할 경우는 그 초과액을 “갑” ()%, “을” ()% 비율로 배분하여 “갑”이 “을”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투자시설명	에너지절감량	에너지절감액	비 고
	○ 목표절감량 ; toe/년	○ 목표절감액 ; 천원/년	
	○ 보증절감량 ; toe/년	○ 보증절감액 ; 천원/년	

계약일반조건

제1조 [계약목적]

본 계약일반조건은 ESCO투자사업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 표준계약서의 에너지사용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 “을”이라 한다)이 성과보증방식에 바탕을 둔 ESCO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정의]

- ① 이 계약일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에너지사용자”라 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에법”이라 한다) 제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2.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라 함은 에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말한다.
 3.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라 함은 에너지사용시설 또는 공정을 에너지절약 시설 또는 공정으로 개조, 보완, 대체, 신설, 증설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에너지절감량(액)”이라 함은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에너지 사용량 또는 에너지비용의 감소를 말한다.
 5. “목표절감량(액)”이라 함은 “을”이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이전에 에너지진단이나 붙임의 “사후관리계획서” 또는 기타 방법에 따라 산출한 최대 에너지절감량(액)을 말한다.
 6. “성과보증”이라 함은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을 “을”이 “갑”에게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7. “보증절감량(액)”이라 함은 “을”이 성과보증을 위하여 “갑”에게 제시하는 에너지 절감량(액)을 말한다.
 8. “초과성과배분”이라 함은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결과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이 목표절감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달성에 따라 발생한 차액을 “갑”과 “을”이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9. “사업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에너지관리진단비용, 설치금액, 사후 관리비용 및 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포함하는 총 비용을 말한다.
 10. “총 사업기간”이라 함은 ESCO투자사업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을 체결

한 날로부터 에너지절감액으로 사업금액을 전액 회수한 날 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 사후관리기간 종료일까지를 말한다.

11. “설치기간”이라 함은 ESCO투자사업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 “갑”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검사를 종료한 날 까지를 말한다.
 12. “성과보증기간”이라 함은 “갑”이 보증절감액으로 사업금액 전액을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말한다.
- ②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한다. 단,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ESCO투자사업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계약문서]

- ① 본 계약문서는 다음 각 호의 문서로 구성되며 각 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1. 계약일반조건 1부
 2. 사업내역서 1부
 3. 특별시방서 1부
 4. 에너지절감량 산출서 1부
 5. 하자보증서 1부
 6. 사후관리계획서(MRV계획 포함) 1부
 7. 에너지절감량 보증서 1부
 8. 투자비상환계획서 1부
 9. ESCO 매출채권 양도 승낙 확인서(양도시만 첨부) 1부
- ② “갑”과 “을”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제1항에 의한 계약문서 중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첨부할 수 있다. 단 제1호 내지 제5호의 문서는 예외로 한다.

제4조 [에너지절약설치 이행보증]

- ① “을”은 당해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설치금액의 (/100)에 해당 되는 금액을 계약체결일까지 “갑”에게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내용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치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이행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설치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이행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을”은 설치기간이 연장된 경우 “갑”이 정하는 기일 내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보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약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이행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약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이행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갑”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설치완료검사 결과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을”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내용의 변경]

- ①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갑”은 “을”에게 서면으로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해 협의할 것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을”은 “갑”과의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로 사업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의거 정산한다.
 - 1. 계약내용에 포함된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내용이나 용역의 변경은 붙임의 “사업내역서”상의 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한다.
 - 2.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내용이나 용역이 발생할 때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 [계약의 해약]

- ① “갑”은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에 착수하지 않거나 또는 당해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목적 달성을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계약의 해약으로 인한 손실금액에 대하여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갑”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때 손실금액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다.
- ② “갑”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약할 경우 “을”은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해약시점까지 투입된 “을”의 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갑”의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갑”은 계약해약 시점까지 실제 소요비용 중 기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을”은 “갑”이 계약에서 정한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비용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의 투자비상환 계획서에 의한 상환금액을 발생일로부터 ()월 이상 지급 받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제14조의

투자비상환 계획서에 의한 상환금액 중 기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일체를 계약
해약 시점에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갑”과 “을”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손해배상]

① “을”은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불이행, 지연 또는 이행보증금 이상의 하자보수 등으로
발생되는 “갑”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작업 중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인적, 물적 사고와 “갑”의
시설물 훼손 및 분실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과 원상복구는 “을”의 책임으로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을”은 “갑”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을”은 사업현장에서 발견되는 위험물질 또는 위험요소의 적절한 제거 및 처리를
책임진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은 현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8조 [착공 및 공정보고]

① “을”은 계약문서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갑”이 지정한 사항이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요구할 경우 “갑”이 지정한 사항이 포함된 공정현황을 “갑”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9조 [지체상금]

① “을”은 계약서에 정해진 설치기간 내에 에너지절약설치 완료에 대한 검사를 득하지
못할 때에는 설치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매 지체일 당 사업금액의 (/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사유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또는 “갑”의 사정
등 “을”의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 지체상금은 면제된다.

③ 지체상금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을”이 “갑”에게 납부한 이행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한 경우 “갑”은 “갑”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10조 [소요 자재의 반입 및 검사]

①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자재는 불임의 “특별시방서”에 따르며 “갑”과 “을”의 합의
하에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 ②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 또는 작업 전에 “갑”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대체품으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 ③ “을”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대체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 “을”은 사전에 상세 내역을 “갑”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대체품의 품질은 규정 품목의 동등 또는 이상의 수준으로 한다.

제11조 [완료검사 및 각 공정별 완료검사]

- ① 완료검사는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완료 후 “을”의 완료확인 및 완료검사 요청에 의하여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한다.
- ② 각 공정별 완료검사는 “갑”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을”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시 검사는 작업 진도 또는 적정자재 사용 여부 및 계약문서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제12조 [폐자재 처리]

- ①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은 처리비용이 사업금액에 포함된 경우 “을”의 책임 하에 적법하게 처리하고 “을”은 폐기물처리 확인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단, 동 처리비용이 사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갑”이 지정한 장소로 “을”이 이동하도록 한다.
- ② 철거된 폐자재 중 사용가능품은 “갑”의 요청시 “을”이 수거하여 “갑”에게 반납하고 불량품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을”이 처리한다.

제13조 [성과보증]

- ① “을”은 성과보증을 위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검사를 실시한 이후 붙임의 “사후관리계획서(MRV 활동 계획서 포함)”에서 제시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에너지절감량을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갑”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 ② “갑”과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측정된 에너지절감액(이하 “측정절감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측정절감액이 보증절감액에 미달하는 경우 “을”은 보증절감액과 측정절감액의 차액을 “갑”에게 현금으로 보전하여야 한다.
 - 2. 측정절감액이 목표절감액을 상회하는 경우 측정절감액과 목표절감액의 차액을 “갑” ()%, “을” ()% 비율로 배분하며, “갑”은 “을”에게 배분된 비율에

-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측정절감액이 보증절감액과 목표절감액 사이에 해당되는 경우 “갑”과 “을”은 제1호 내지 제2호의 차액보전 및 초과성과배분의 의무를 갖지 아니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보전금액 또는 초과성과배분금액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 ④ “갑”과 “을”은 에너지절감량의 공정한 측정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감량의 측정을 ()에 위탁하여 실시토록 하며,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 부담한다.
 - ⑤ “갑”과 “을”은 특별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차액보전액, 초과성과배분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된 시점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에 연리 ()%의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한다.
 - ⑥ “갑”은 사업기간 종료 이전에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 당해 시설을 변경하거나 철거할 수 없다. 다만, “갑”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 시설을 철거할 경우 “갑”은 잔여기간 동안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후관리비용 등 미지급 금액을 일시에 지불하여야 한다.
 - ⑦ “을”은 보증절감액과 측정절감액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가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투자비 상환]

- ① “을”이 선 투자한 에너지절약 설치금액의 상환은 설치기간 완료 후 붙임의 “투자비 상환계획서”에 의거 시행된다.
- ② “갑”이 특별한 사유없이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과 합의된 시점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갑”은 해당 상환금에 연리 ()%의 이자를 포함하여 “을”에게 지급한다.

제15조 [지급이자]

- ① “갑”은 “을”이 한국에너지공단에 자금을 신청하면 평가결과에 따라 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 ②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환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을”이 투자비 조달시 민간자금으로 조달가능한 연리 ()%의 이자로 “갑”이 “을”에게 지급한다.
- ③ 계약 후 “을”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2항의 지급이자를 해당자금 금리로 수정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16조 [매출채권의 양도] - (매출채권 양도시만)

- ① “을”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ESCO 매출채권을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매출채권 양도를 승낙하는 등 이에 수반된 제반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을”은 ESCO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에게 ESCO 매출채권 양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한 후 “갑”의 승낙을 받아 불임의 ESCO 매출채권 양도 승낙 확인서를 계약서에 첨부해야 한다.
- ③ “갑”은 본 계약과 관련한 ESCO 매출채권 양도의 승낙은 매출채권을 양도한 금융기관에게 제13조에 따른 예상에너지절감량(액) 및 제 16조에 따른 사후관리 및 하자보증 책임을 요구할 수 없음을 확인하며, 또한 매출채권 양도 승낙한 금액 일체를 확정채권으로 인정하여 불임의 투자비 상환계획서에 따라 금융기관에 어떠한 이익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을”은 ESCO 매출채권 양도후에도 “갑”에게 제 16조에 따른 사후관리 및 하자보증을 계약된 기간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 [사후관리 및 하자보증]

- ① 에너지절약설치의 사후관리는 설치완료 검사일을 개시일로 하여 불임의 “사후관리 계획서”에 의거 시행토록 한다.
- ② “을”은 “갑”의 하자통보 즉시 설비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갑”의 승인을 득한 후 신속히 보수하여야 한다.
- ③ 하자이행 보증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갑”의 사용상 부주의 또는 천재지변 등 “을”의 귀책에 따라 발생한 하자가 아닌 경우에는 “갑”의 부담으로 복구한다.
- ④ 불임의 “사후관리계획서”에 명시된 관리 이외의 관련법규에 의한 정기적인 검사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여야 할 경우, 제반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8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의 엄수 의무]

- ① “갑”은 본 계약에 의하여 “을”이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또는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갑”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반드시 “을”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을”은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갑”의 정보를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로 누설할 수 없으며, “을”의 고용인에 대해서도 “갑”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토록 관리한다.

제19조 [분쟁해결]

-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협의에 의해 해결한다.
- ② 분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붙임-2

사업내역서

비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I. 시 설 설 치 비				
1.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소 계			
2.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3. 경 비				
4. 일반관리비 ()%				
5. 이 윤 ()%				
II. 에너지관리진단비				
1. 직 접 인 건 비				
2. 직 접 경 비				
3. 제 경 비				
4. 기 술 료				
III. 사후관리비(MRV 포함)				
1. 재 료 비				
2. 노 무 비				
3. 경 비				
4. 일반관리비				
IV. 지 급 이 자				
V. 총 원 가				

<별첨> 상세내역서

- # 붙임-3 특별시방서(별지 제1호 서식의 #붙임-3과 동일)
- # 붙임-4 에너지절감량 산출서(별지 제2호 서식의 #붙임-4과 동일)
- # 붙임-5 하자보증서(별지 제1호 서식의 #붙임-5와 동일)
- # 붙임-6 사후관리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의 #붙임-6과 동일)
- # 붙임-7 에너지절감량 보증서(별지 제2호 서식의 #붙임-7과 동일)
- # 붙임-9 ESCO매출채권 양도 승낙 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의 #붙임-9와 동일)

붙임-8

투자비상환계획서

1. “갑”과 “을”은 본 계약서의 제14조[투자비 상환]에 따른 투자비 상환계획을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2. 상환은 “을”이 지정한 00은행 xxx-xx-xxxxxxx계좌(예금주: 000)로 매월(분기) xx일까지 입금한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투자비의 상환은 준공 된 20xx년 x월 부터 시작된다.

“갑”

인

“을”

인

사업금액 :

상환기간 :

상 환 액 :

상환금리 :

회차	일자	상환액	상환액누계	회차	일자	상환액	상환누계액

[별지 제4호 서식]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영업보고서(제10조제1항 관련)

1. 업체개요

업 체 명		대 표 자	
ESCO등록번호		ESCO등록연월일	
담 당 자		전 화 번 호	
영업소 소재지			
납입자본금	(백만원)	사업자등록번호	
실질자본금	(백만원)	총 종업원수	
총 매 출 액	(백만원)	ESCO종사원수	
ESCO매출액	(백만원)	주요 투자분야	
ESCO영업이익	(백만원)	보유 장비	
보유 기술인력		보유 면허	

2. ESCO사업실적(년도)

번호	설치기간	투자설비(명)	에너지 사용자	자금조달방식(백만원)				총투자비 (백만원) (①+②+ ③+④)	계약 방식
				정책 융자금 ①	이차 보전 융자금 ②	기타 정부· 지자체 지원금 ③	자체 자금 ④		

(주) 총투자비는 지급이자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작성

IV. 부 록

1. ESCO 관련법규 주요내용
2. ESCO 자체투자실적인정 안내
3. ESCO 투자사업 대표사례



1

ESCO 관련법규 주요내용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14조(금융·세제상의 지원) ① 정부는 에너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설치·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과 우수한 에너지절약 활동 및 성과에 대하여 금융상·세제상의 지원,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① 정부는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이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라 한다)가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사업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

②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자산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6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취소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그 등록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4.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내준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5. 제25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경우

제27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제한) 제26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등록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25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제27조의2(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 ①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에너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에너지절약사업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
 2. 에너지절약사업을 위한 채무 보증 및 융자
 3. 에너지절약사업 수출을 위한 주거래은행 설정에 관한 보증
 4. 에너지절약사업으로 인한 매출채권의 팩토링
 5. 에너지절약사업의 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
 6. 조합원 및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제사업
 7. 조합원 출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투자사업
- ③ 제2항제6호의 공제사업을 위한 공제규정, 공제규정으로 정할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25.]

제6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대기전력저감대상

제품·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각 시험기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진단기관과 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효율관리기자재 제조업자 등의 사무소·사업장·공장이나 창고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에너지사용기자재,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이나 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8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7. 25., 2013. 3. 23.>

1. 제16조제2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생산 또는 판매의 금지명령
2.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취소
3. 제24조제1항에 따른 각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4.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측정을 할 수 있는 자의 승인 취소
5. 제26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취소. 다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등록 취소는 제외한다.
6. 제33조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제6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시공업자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2013. 3. 23., 2016. 12. 2., 2018. 4. 17.>

1. 제11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2. 제12조에 따른 이행 여부의 점검 및 실태파악
3. 제15조제3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측정결과 신고의 접수
4. 제19조제3항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측정결과 신고의 접수
5.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측정결과 신고의 접수
6.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신청의 접수 및 인증

7.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취소 또는 인증사용정지 명령
8. 제2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9. 제29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 및 관리
10.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신고의 접수
11. 제32조제3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관리·감독
12. 제32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지도
- 12의2.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유지·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실태 파악
13.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검사증의 교부 및 검사대상기기 폐기 등의 신고의 접수
- 13의2.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및 검사증의 교부
14. 제40조제3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해임 또는 퇴직신고의 접수 및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기한 연기에 관한 승인

제7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69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78조 (과태료) ① <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략>
 3. 제66조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한 자
- ③ <생략>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 및 제9호의2부터 제9호의 4까지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개정 2009.1.30., 2015.1.28.>
 1. ~ 11. <생략>
 12.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시행 2021. 4. 1.] [대통령령 제31576호, 2021. 3. 30., 타법개정]

제27조(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설치·시공은 다음 각 호의 시설투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 5.>

1. 노후 보일러 및 산업용 요로(燎爐: 고온가열장치) 등 에너지다소비 설비의 대체
2. 집단에너지사업, 열병합발전사업, 폐열이용사업과 대체연료사용을 위한 시설 및 기기류의 설치
3. 그 밖에 에너지절약 효과 및 보급 필요성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설치·시공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1. 에너지원의 연구개발사업
2.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및 에너지기술개발사업
3. 기술용역 및 기술지도사업
4. 에너지 분야에 관한 신기술·지식집약형 기업의 발굴·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제29조(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사업
2. 에너지절약형 시설 및 기자재의 연구개발사업

제30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0조의2(공제규정)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이 같은 조 제2항제6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0. 26.]

제31조(에너지절약형 시설 등) 법 제28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에너지절약형 공정개선을 위한 시설
2.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에너지절약이나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관련된 기술개발

제51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 7. 27., 2013. 3. 23., 2017. 11. 7., 2018. 7. 17.>

1. 법 제11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2. 법 제12조에 따른 이행 여부의 점검 및 실태파악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측정 결과 신고의 접수
4.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측정 결과 신고의 접수
5.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측정 결과 신고의 접수
6. 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신청의 접수 및 인증
7.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취소 또는 인증사용 정지 명령
8. 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9.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 및 관리
10.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신고의 접수
11.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관리·감독
12.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지도
- 12의2. 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유지·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실태 파악
13. 법 제3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14.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검사증의 발급(제13호에 따른 검사만 해당한다.)

15. 법 제39조제7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폐기, 사용 중지, 설치자 변경 및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에 대한 신고의 접수
16.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해임 또는 퇴직신고의 접수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 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1. 7.>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2.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검사증의 발급(제1호에 따른 검사만 해당한다.)
 3.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4.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검사증의 발급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7.>

제52조(보고) 제51조에 따라 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삭제 <2018.4.30.>

[본조신설 2009.7.27.]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5. 7. 24.>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제30조제2항 관련)

구분	내 용		기준
장비	1. 적외선 온도계		1대 이상
	2. 데이터 기록계		1대 이상
	3. 온도·습도계		1대 이상
자산	법인	자본금	2억원 이상
	개인	자산평가액	4억원 이상
기술 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기계, 재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에너지 또는 가스 분야의 기사		3명 이상

비고

1. 법인인 경우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을 말하며, 납입자본금과 최근 1년 이내에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실질자본금으로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나머지를 말한다)가 모두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2. 개인인 경우 자본금은 자산평가액으로 하되, 자산평가액은 등록된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3. 기술인력 중 기사는 같은 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정한 에너지진단사로 대체할 수 있다.
4. 한 사람이 두 종류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9. 10.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제2호파목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생략>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 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78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 서. <생략>					
어.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78조 제2항제3호	500	700	900	1,000
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78조 제4항제12호	150	200	250	300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시행 2022.1.26.]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9호, 2022.1.26., 일부개정]

제24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신청)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신청서 및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의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할 때 제출한 서류 중 변경된 것만을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9., 2015. 7. 29.>

1. 사업계획서
2. 삭제 <2011. 1. 19.>
3. 영 별표 2에 따른 보유장비명세서 및 기술인력명세서(자격증명서 사본을 포함한다)
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서(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법」 제6조에 따른 세무사가 검증한 최근 1년 이내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25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증) ① 공단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이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7호서식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증을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공단에 재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그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보고를 명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효율관리기자재·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경우 : 연도별 생산·수입 또는 판매 실적
2. 에너지절약전문기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말한다. 이하

- 같다)의 경우 : 영업실적(연도별 계약실적을 포함한다)
3.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경우 : 개선명령 이행실적
 4. 진단기관의 경우 : 진단 수행실적
- ②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6. 28., 2013. 3. 23., 2018. 7. 23.>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표시의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효율관리시험기관의 지정 및 자체측정의 승인을 위한 시험능력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항
 4.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지정 및 자체측정의 승인을 위한 시험능력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6.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표시의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7.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항
 8.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표시의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9.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을 위한 시험능력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
 10.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항
 1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효율관리시험기관, 대기전력시험기관 및 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취소요건의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1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은 자의 승인취소 요건의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13.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수행한 사업에 관한 사항
 1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15.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사용량 신고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16.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진단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17.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기준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18. 법 제33조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요건의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19.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개선명령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20.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설치자의 검사 이행에 관한 사항
 21.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자의 검사 이행에 관한 사항
 22. 법 제39조제7항 각 호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폐기 등의 신고 이행에 관한 사항
 23.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
 24.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해임 또는 퇴직의 신고 이행에 관한 사항
- ③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매달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실적을 다음 달 10일 까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 결과 불합격한 경우에는 즉시 그 검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28.>

[별지 제6호 서식]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7.29.>

한국에너지공단 전자민원(esco.energy.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호(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사항	자본금(납입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자본금[]백만원,		자산평가액[]백만원	
	자본총계(실질자본금) 자본총계[]백만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에너지절약전문기업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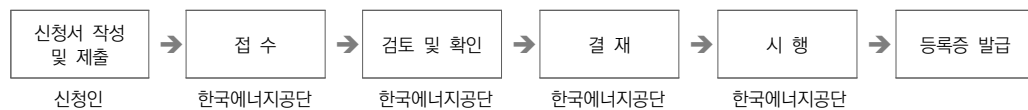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보유장비명세서 및 기술인력명세서 (자격증명서 사본을 포함합니다) 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서(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법」 제6조에 따른 세무사가 검증한 최근 1년 이내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경된 것만을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7호 서식]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7.29.>

등록번호 제 호

에너지절약전문기업등록증

1. 상호 또는 명칭:

2. 주 영업소 소재지:

3. 등 록 연 월 일: 년 월 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2

ESCO 자체투자실적인정 안내

※ ESCO 자체투자실적 인정제도는 ESCO협회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ESCO협회 홈페이지 (www.esco.or.kr) > 협회업무 > ESCO자체투자실적인정 에서 자체투자실적 인정제도 관련 내용 확인가능

가. 도입배경

- ESCO가 민간자금을 활용하여 수행한 자체투자사업을 ESCO투자사업으로 인정함으로써 민간자금 이용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ESCO육성을 위하여 ‘자체투자실적 인정제’ 도입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개정(’06.1)을 통한 자체투자실적 인정제도 근거 마련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자체투자실적 인정 규정’ 제정(’06.8)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자체투자실적 인정 규정’ 개정(’15.8)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자체투자실적 인정 규정’ 개정(’17.6)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자체투자실적 인정 규정’ 개정(’22.1)

나. 적용대상사업 요건

- ESCO계약을 체결하여 당해연도에 준공된 사업
 - 단, 4분기(10~12월)에 준공된 사업인 경우 다음 연도 1분기(1~3월)까지 신청 가능
- 단,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계속사업의 경우 당해 연도 투자금액 부분에 대하여 인정 가능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에 근거한 에너지절약용역사업
- 해외에서 시행한 에너지절약용역사업
- ESCO사업 공동도급의 경우 참여비율대로 각각 신청

- 정부 ESCO자금 추천을 받은 경우 일부 자체 투자한 부분도 실적인정 신청을 하여야만 실적으로 인정

다. 접수일시 및 제출서류

- 매월 1~15일까지 ESCO 협회에 접수(방문접수만 가능)
- 자체투자실적인정 신청서류(① ~ ⑤)

- ① 계약서(성과확정/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 표준계약서에 준한 서류)
- ② 자체투자실적 신청서(별지 제1호 ~ 4호 서식)
 - 제1호 : 자체투자실적 인정 신청서
 - 제2호 : 자체투자실적 신청 시설명세서
 - 제3호 : 에너지사용자의 준공확인서(기성확인서)
(단, 열병합발전사업의 경우에는 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필증” 및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필증”으로 함. 계속사업의 경우는 투자사업장에서 발행한 당해연도 기성확인서로 함)
 - 제4호 : 동의서 및 신청자 유의사항
- ③ ESCO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 ④ 기 타
 - ESCO의 사업자등록증(또는 납세번호증) 및 에너지사용자의 사업자등록증
 - 사업전·후 도면, ESCO와 하도업체/물품구입업체 간의 견적서 등
 - 사진(설비전경 및 명판)
- ⑤ ESCO자금을 부분적으로 용자받은 경우에는 ① ~ ④의 첨부서류를 생략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추천서로 갈음할 수 있음
(※ 사본으로 된 서류는 필히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함)

라. 자체투자실적 평가기준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자체투자실적 인정 규정 제4조(자체투자실적 평가방법 및 적용 등)에 근거하여 평가
 - 자세한 내용은 ESCO협회 홈페이지(www.esco.or.kr) > 협회업무 > ESCO자체 투자실적인정에서 확인 가능

마. 인정절차

- 자체투자실적 인정 신청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실적인정금액평가 → 실적 인정금액 심의·확정(자체투자실적 심의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공단 통보 → ESCO 업체 실적인정 금액 통보 및 투자실적으로 반영

바. 사후관리

- 협회는 자체투자사업의 이행여부, 에너지절감량 확인 등을 위해 ESCO에 필요 자료 제출 요청 및 현장 확인

사. 자체투자실적 인정비용 및 수수료

- 자체투자실적 인정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수료를 신청시 납부

아. 자체투자실적 인정 취소 및 효력정지

- 인정 취소 대상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자체투자실적으로 인정받은 경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3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인정 효력의 정지
 - 사후관리 등에 협조하지 않거나 기피하는 등 20일 이상 지연시키는 경우 해당 사업의 사후관리가 완결될 때까지 자체투자실적 인정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음
- 자체투자실적 인정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ESCO는 향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본 투자실적 인정 신청자격 제한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자체투자실적 인정 신청서

□ 일반현황

신청업체명		대 표 자		업 종	
담 당 자		소 속		직 급	
주 소				전화번호	

□ 자체투자사업의 내용(※ 금액 표기시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표기할 것)

사업장명				주 소		
투자시설명	예) 조명, 보일러, 열병합발전시스템, 인버터 등					
계 약 방 식	성과확정계약(),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					
계 약 일		착 공 일		준 공 일		
총계약금액 (VAT미포함)	천원					
자 금 조 달 방 법	정 책	천원	*자 체	천원	합 계	천원
	* 자체자금의 경우 자체보유자금 및 금융기관의 일반용자자금을 포함함					
연간에너지절감량(액)	* 성과확정계약의 경우 예상에너지절감량(액)을, 성과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절감량(액)을 표기					
- 연간절감량	연 료	toe	전 력	MWh	합 계	toe
- 연간절감액	연 료	천원	전 력	천원	합 계	천원

에너지절약전문기업관리규정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투자실적 인정을 신청합니다.

20

회사명 :
대표자 : (인)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뒷면]

- ① 계약서(에너지절약 성과확정/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 표준 계약서에 준한 서류)
- ② 자체투자실적 신청서(별지 제1호 ~ 4호 서식)
 - 제1호 : 자체투자실적 인정 신청서
 - 제2호 : 자체투자실적 신청 시설명세서
 - 제3호 : 에너지사용자의 준공확인서(기성확인서)
단, 열병합발전사업의 경우에는 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필증” 및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필증”으로 함. 계속사업의 경우는 투자사업장에서 발행한 당해연도 기성 확인서로 함
 - 제4호 : 동의서 및 신청자 유의사항
- ③ ESCO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 ④ 기 타
 - ESCO의 사업자등록증(또는 납세번호증) 및 에너지사용자의 사업자등록증
 - 사업전·후 도면, ESCO와 하도업체/물품구입업체 간의 견적서 등
 - 사진(설비전경 및 명판)
- ⑤ ESCO자금을 부분적으로 용자받은 경우에는 ① ~ ④의 첨부서류를 생략하고 에너지 이용합리화자금 추천서로 갈음할 수 있음
(※ 사본으로 된 서류는 필히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함)

[별지 제2호 서식]

자체투자실적 신청 시설명세(계약상세 명세 기준, 해당사항만 기재)

번호	시설명	규격/ 단위	수량	금 액(천원)				비 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1	재료비 - - -							설비별 모델명, 용량, 수량 등 상세 기재
2	노무비 - - -							
3	경비 - - -							
4	일반관리비 - - -							
5	이윤							
6	기타 - -							
합 계								

[외자] 환율기준일: 년 월 일(준공일 전 20일 이내의 환율적용, 출처 홈페이지기재)

※ 자체투자실적 인정신청 금액을 기록하고, 수입기자재일 경우 비교란에 외화금액 표시

※ 상기 시설명세는 계약서 및 계약상세 내역서를 근거로 작성해야 하며, 상기 시설명에서 해당되는 항목이 없을 경우 기재할 필요 없음

[별지 제4호 서식 앞면]

동 의 서

1. 당사는 자체투자실적인정 신청을 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과 틀림없는 심사서류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하며, 향후 협회가 사후관리 등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시 적극 협조할 것에 동의합니다.

2. 당사는 본 ESCO사업과 관련된 모든 계약서를 제출했으며 다른 내용의 계약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만약에 다른 내용의 계약이 존재할 경우에는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3.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기인정한 자체투자실적을 영구 취소하고, 협회의 사후관리에 협조하지 않거나 기피하는 등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자체투자실적 인정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고 일정기간동안 자체투자실적인정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어떠한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회사명 :

대표자 : (인)

주 소 :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뒷면]

신청자 유의사항

-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신고로 간주되는 사례
 - 자체투자실적 신청서, 자체투자사업 준공확인서(기성확인서) 등 실적 인정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 또는 발급받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 제출서류의 기재내용이 모호하거나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설비내용 등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
 - 군부대공사라는 이유로 사업현장 소재지, 발주자 전화번호 등이 불명확 하거나 투자현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동일공사에 대하여 투자사업명 등을 달리하여 신청한 경우
 - ESCO 등록일 이전에 시공한 사업을 자체투자실적으로 신청한 경우 등
 - 제출된 계약서 이외에 다른 내용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 협회가 실적평가 작업을 시작한 후에는 자료수정이 불가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모든 책임이 있음

위의 내용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함

20

회사명 :


대표자 : (인)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장 귀하

3 ESCO 투자사업 대표사례

구 분		내 용		
기업현황	업체명	△△시청		
	기업유형	공공기관		
투자내용	ESCO 계약	성과확정 계약		
	투자시설(금액)	LED조명(810백만원)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저효율 나트륨 가로(보안)등기구를 고효율 LED 가로(보안)등기구로 교체하여 전기사용량 절감을 통한 공공요금 절감 ※ LED 가로등, 보행등, 보안등 1,262개 교체 ○ ESCO가 자금을 조달하는 성과확정 계약으로서 에너지 사용자는 초기 투자비 부담이 없음 		
투자효과	에너지절감	217.1 toe (절감율 80.3%) (사업전) 270.4toe/년 → (사업후) 53.3toe/년		
	에너지비용절감	110백만원/년	회수기간	7.4년

구 분		내 용		
기업현황	업체명	육군▽▽▽▽부대		
	기업유형	기타		
투자내용	ESCO 계약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 계약		
	투자시설(금액)	LED조명(672백만원)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저효율 나트륨 경계등을 고효율 LED 경계등으로 교체하여 전기사용량 절감 ※ LED 경계등 1,746개 교체 ○ ESCO가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 계약으로서 에너지사용자는 초기 투자비 부담이 없음 		
투자효과	에너지절감	348.2 toe (절감율 79.2%) (사업전) 439.7toe/년 → (사업후) 91.5toe/년		
	에너지비용절감	165 백만원/년	회수기간	4.1년

구 분		내 용		
기업현황	업체명	□□양회(주)		
	기업유형(사업)	중견기업(요업)		
투자내용	ESCO 계약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 계약		
	투자시설(금액)	폐열회수 보일러 등		
	금액	6,500백만원(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변동금리 1.5%)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1호 소성킬른에서 발생하는 고온 배가스를 대기로 배출하나, 회수하여 증기를 생산하고 증기 터빈에 공급하여 발전량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관식 폐열보일러 1대 설치(14.2 t/h) ○ 시멘트 원료수송방식 변경 및 신규설비 도입으로 연료 절감과 생산성 향상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버터 제어형 공기압축기 8대 설치 		
투자효과	에너지절감	4,874 toe (절감율 13.4%) (사업전) 36,391toe/년 → (사업후) 31,517toe/년		
	에너지비용절감	2,516 백만원/년	회수기간	2.6년
시설사진				

구 분		내 용		
기업현황	업체명	OO식품(주)		
	기업유형(사업)	중견기업(식품)		
투자내용	ESCO 계약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 계약		
	투자시설(금액)	인버터 제어형 압축기 (650백만원)		
	금액	650백만원(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변동금리 1.5%)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년전 공장 신축시에 설치된 공기압축기가 노후화 되었고, 구역별로 분산되어 설치되어 관리의 어려움 발생 ○ 통합 압축기룸을 설치하여 무부하시에 발생하는 에너지 낭비가 없는 인버터 제어형 공기압축기를 설치하여 에너지 절감 ※ 일반형 공기압축기 11대 → 인버터 제어형 공기압축기 4대 ○ 에너지 낭비요인 명확히 파악 및 통합제어시스템 설치를 통해 에너지절감설비 정밀제어 		
투자효과	에너지절감	397.75toe/년 (절감율 60%) (사업전) 663.78toe/년 → (사업후) 267.03toe/년		
	에너지비용절감	227백만원/년	회수기간	2.9년
시설사진				

ESCO 사업안내서

발행인 이 상 훈
발행처 한국에너지공단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323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용자실
TEL 052) 920-0491, 0492, 0494
FAX 052) 920-0500
ESCO 등록 홈페이지 : <https://finance.energy.or.kr>
ESCO 자금지원 홈페이지 : <https://finance.energy.or.kr>
발행일 2022년 5월
